

개정 · 증보판

2026 계약 실무 편



들어가며



계약업무는 공공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행정 분야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법령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계약 유형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현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실무편람」 개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법령과 제도 변화 내용을 반영하고,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와 감사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과 내용을 정비하여 실무 중심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약업무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일률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과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본 편람이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그리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교육행정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개정 · 증보판

2026 계약 실무 편람



contents

제1장 계약일반

제1절 지방계약의 이해

1. 지방계약이란	8
2.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15

제2절 계약의 종류

1. 수입 및 지출에 따른 분류	20
2. 계약 목적물별 분류	21
3. 경쟁 형태별 분류	23
4.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35
5. 낙찰자 결정방법별 분류	36

제3절 계약업무 절차

1. 유형별 절차도	40
2. 업무절차별 세부내용	41

제4절 계약 체결·이행 및 대가 지급

1. 계약 체결	53
2. 계약의 이행 및 대가 지급	56
3. 계약과정의 공개	65

제5절 계약관련 기타사항

1.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67
2. 압류 및 공탁	77
3. 증명 및 확인사항	79

제2장 공사계약

제1절 공사계약 일반

1. 공사의 종류	82
2. 흐름도	88
3. 계약방법 결정	89
4. 낙찰하한율(추정가격 기준)	89
5. 계약의 방법	90
6. 입찰	97
7. 계약의 체결	98
8. 계약의 이행	100
9. 준공	114
10. 대가 지급	114
11. 하자관리	122
12. 공사계약관련 제출서류 목록	124

제2절 공사계약 실무사례

◎ 제한경쟁입찰(지역)-강당 환경개선 공사	127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 계약-옥상방수공사	211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S2B)-리모델링공사	258

contents

제3장 용역계약

제1절 용역계약 일반

1. 용역의 정의	286
2. 용역계약의 종류 및 내용	286
3. 흐름도	289
4. 용역사업 발주 시 검토 면허	290
5. 계약의 이행	291
6. 계약의 변경	306
7.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307
8. 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308
9. 용역계약 관련 제출서류 목록	309
10. 설계·감리용역 일반	311

제2절 용역계약 실무사례

◎ 제한경쟁입찰(지역) - 수학여행 용역	321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 수학여행 용역	389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차량임차 용역	419

제4장 물품계약

제1절 물품계약 일반

1. 물품의 정의	447
2. 계약 방법	447
3. 흐름도	448
4. 계약의 이행	451
5. 물품구매(제조)계약관련 제출서류 목록	483

제2절 물품계약 실무사례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학습준비물 구매	485
◎ 입찰 -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506
◎ 2단계 입찰 (규격[기술]·가격 동시) - 교복 학교주관 구매	539
◎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 제안요청 - 가구류 구매(공동수급)	562
◎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 제안공고 - 노트북컴퓨터 구매	584
◎ 다수공급자계약(MAS) - 졸업앨범 구매	599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정보화소모품 구매	614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도서 구매	625

제5장 Q&A

제1절 공사계약 질의·답변	632
----------------------	-----

제2절 용역계약 질의·답변	638
----------------------	-----

제3절 물품계약 질의·답변	642
----------------------	-----

제6장 주요감사 지적사례

제1절 계약방법 결정 및 사전이행 절차에서 지적된 사례	650
--------------------------------------	-----

제2절 입찰(견적)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	658
-------------------------------------	-----

제3절 계약 이행 및 검사 검수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	668
-------------------------------------	-----

제4절 대가 지급 및 이후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	674
----------------------------------	-----

제5절 기타 지적 사례	680
--------------------	-----

계약업무 바로 찾기



1	가구류 구매	562	30	도서 구매	625
2	강당 환경개선 공사	127	31	리모델링 공사	258
3	개산계약	35	32	물량내역서	28, 155, 232
4	거래실례가격	14	33	물품선정위원회	474
5	건설기계 대여	118, 142	34	물품·용역 분할발주 금지	451
6	경미한 공사	83, 632, 633	35	보험료 사후정산	97, 115, 455
7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36	36	복수예비가격	14, 50, 466
8	계속비계약	35	37	부도업체 등의 심사방법	50
9	계약금액의 조정	58, 109	38	부정당업자제재	67
10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108	39	4대보험 납부 증명 및 확인사항	79
11	공공구매제도(의무구매)	42	40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35
12	공동계약 대가지급	438	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6, 129
13	공사감독	280	42	석면해체·제거공사	21, 87
14	공사감리	317	43	선금정산	58, 377
15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01	44	설계공모	36, 313
16	공사원가계산서	132	45	설계변경	59, 109
17	공사이행보증	99	46	설계용역	311
18	교복 학교주관 구매	539	47	소기업·소상공인	24, 299, 330
19	국가유산수리공사	21, 87	48	소방시설공사	21, 86
20	국민주택채권 매입	55, 99, 666	49	손해배상보험	319
21	기성금 지급	115, 128, 194	50	수의계약 내역 공개	66
22	기초금액	14	51	수의계약 배제사유	75
23	낙찰자 결정방법	36	52	수학여행 용역	321
24	낙찰하한율	89, 304, 427, 454	53	시설물유지보수	22
25	납세증명서	79	54	실적증명서	164, 355, 410, 532
26	노트북컴퓨터 구매	584	55	압류 및 공탁	77
27	다수공급자계약	296, 562, 584, 599, 645	56	예정가격	14
28	단가계약	35, 37	57	옥상방수공사	211
29	대가지급	56, 114, 674	58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14

계약업무 바로 찾기



59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36	88	폐기물 처리	119, 120
60	2단계입찰	36, 37, 289, 389, 539	89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	14
61	인지세	54	90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36
62	일반입찰	23	91	하도급 계약	104
63	입찰공고의 시기	46	92	하도급 지급 보증수수료	129, 213
64	입찰무효	47	93	하도급 제한	104
65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7	94	하도급지킴이	100
66	입찰보증금	20, 47, 98	95	하자검사	123, 209, 284
67	장기계속계약	35	96	하자관리	122
68	재공고입찰	45	97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506
69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157, 529	98	학술용역	287
70	전기공사	21, 83	99	학습준비물 구매	485
71	정보통신공사	21, 84	100	해제·해지	61
72	정보화 소모품 구매	614	101	행정소송	9
73	조합추천 수의계약	454	102	협상에 의한 계약	36, 38
74	종합계약	35	103	확정계약	35
75	종합평가낙찰제	36	104	환경관리비	117, 197
76	중소기업자	24	105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35
7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300	106	희망수량입찰	36
78	지명입찰	26			
79	지역제한	24, 29			
80	지연배상금	60, 281			
81	직접시공계획서	57, 179, 240			
82	차량임차 용역	419			
83	추정가격	13			
84	추정금액	13			
85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기준	30			
86	특수조건	171, 429, 517			
87	판단기준일	47			

제1장 계약일반



제1절 지방계약의 이해

1. 지방계약이란
2.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제2절 계약의 종류

1. 수입 및 지출에 따른 분류
2. 계약 목적물별 분류
3. 경쟁 형태별 분류
4.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5. 낙찰자 결정방법별 분류

제3절 계약업무 절차

1. 유형별 절차도
2. 업무절차별 세부내용

제4절 계약 체결·이행 및 대가 지급

1. 계약 체결
2. 계약의 이행 및 대가 지급
3. 계약과정의 공개

제5절 계약관련 기타사항

1.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2. 압류 및 공탁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4. 4대보험 납부 증명 및 확인사항



제1절

지방계약의 이해

1

지방계약이란

가. 개념

지방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된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나. 근거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지방계약의 특성

1) 지방계약의 원칙

- 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간의 계약과 달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결됨
- 나)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됨

2) 지방계약의 주요특성

가) 지방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

- 종전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다가 2006.1.1.부터 정부계약과 구분된 독자적인 법체계 확립

나) 정부조달협정 내용의 반영

- 정부조달협정은 자국의 정부조달시장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상대방 회원국에게 상호 개방하도록 하는 협정임. 현재 정부조달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계약법」에 동협정내용을 반영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입찰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5조 제1항,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고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훈시적 성격

- 「지방계약법」은 회계기관 및 계약담당자에 대한 훈시적 성격으로서 동법에 위반되더라도 원인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담당자가 계약조건 등에 반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

라) 절차법규적 성격

- 「지방계약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보다 대부분 절차(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등)를 규정한 것으로 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함

마) 다양한 하위규정 존재

- 「지방계약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많은 하부 규정을 두고 있음(예규, 고시, 계약일반조건 등)

바) 「지방계약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민법상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함
- 지방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됨

구분	내용
민사소송 대상	입찰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등) 및 계약절차(대금지급, 계약해제 등)와 관련한 행위
행정소송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

라. 지방계약 관련 법 체계

1) 기본법령

구분	명칭	비고
기본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2) 지방계약 관련 법령 등

구분	소관	명칭
개 별 법	재정경제부	• 「인지세법」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기획예산처	• 「협동조합 기본법」
	교육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업통상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표준화법」 • 「제품안전기본법」

구분	소관	명 칭
개 별 법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 「장애인복지법」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 「사회복지사업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사업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건설기계관리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계설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청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 례 · 규 칙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구분	소관	명 칭
조 례 · 규 칙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관공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2단계 입찰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물 구매 활성화 조례」
지 침 · 공 고	경상남도교육청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 경상남도교육청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 경상남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 공사용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경상남도	•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개선
	경상남도	•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지방계약 법령 관련 주요 예규

소관	예 규 명	구 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 입찰 특별유의서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장 계약일반

제2장 공사계약

제3장 용역계약

제4장 물품계약

제5장 Q&A

제6장 주요감사지적사례

소관	예 규 명	구 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이하 「낙찰자결정기준」 이라 한다)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재정경제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기후에너지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건설업 관리규정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4) 계약 관련 각종 고시 등

소관	고시 및 공고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 교육청(학교 포함)은 국제입찰 대상기관이 아님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
고용노동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2023개정, 탄소중립항목추가)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소관	고시 및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마. 계약용어

1) 추정가격

구 분	내 용
정의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수의 계약 기준 등) 예정가격 결정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시행령 제2조제1호)
산정방법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시행령 제7조)

2) 추정금액 및 공사예정금액

구 분	내 용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3) 예정가격

가) 정의 및 결정방법(시행령 제2조, 제9조)

구 분	내 용
정의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두는 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함. 다만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나) 예정가격 결정기준(시행령 제10조)

적용순서	요 건	내 용
① 거래실례 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위에 없는 물품) -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 물품·공사·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 -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 의뢰하여 작성
③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	-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 연도별 상·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
④	감정가격	20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단, 500만원 이하인 경우 1개 감정평가 가능)
	유사한 거래실례 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TIP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제조구매계약에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2이상 사업자”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함(회계 41301-3517, '97.12.22.)

다) 예정가격의 작성

구 분	내 용
작성절차	①추정가격 작성 → ②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가격 작성 → ③기초금액 작성 → ④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예정가격 결정
설계가격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 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
기초금액	조사가격이나 설계가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조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금액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

라) 예정가격 작성의 생략(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구 분	내 용
대 상	•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함) •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낙찰기준 가격	•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함(시행령 제30조 제3항)

2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같음)
-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
-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 교량·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연장·경간·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예: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 중복 제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예: 추정가격 4억원의 물품 구매시 납품실적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
-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예: 200병상 및 2억원이상/도로5km 및 교량 2km)
-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예: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예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 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예: “○○설치공사 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 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예: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90%))
-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예: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체결)
-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다만, 300억원 이상 공사입찰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예: 단순노무용역 등)
-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 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는 사례
-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법 제31조, 법 제33조, 시행령 제92조)¹⁾

- 1)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계약 체결 금지(법 제33조)
- 2)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사업자인 경우 그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체결 금지(법 제33조)
- 3)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과 관계가 있는 계열회사 등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체결금지(법 제33조)
- 4)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갖추지 않은 경우
- 5)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
- 6)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
- 7)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
- 8) 영업정지 중인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또는 사업행위가 일시 중지된 자
-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TIP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 ① 소속 고위공직자
 -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률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⑤ 「국회법」 제37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직무 담당 국회의원
 - ⑥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의회의원
 - ⑦ 위 ①~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⑧ 위 ①~⑦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⑨ 위 ①~⑦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 사업자
- ※ 단,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1) 제1장 계약일반 제5절 계약관련 기타사항 “2.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참고

다. 기간 계산방법

1) 민법 기간 계산

가) 기본원칙

- 지방계약법령에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 준용

나) 민법 기간 계산(민법 제1편 제6장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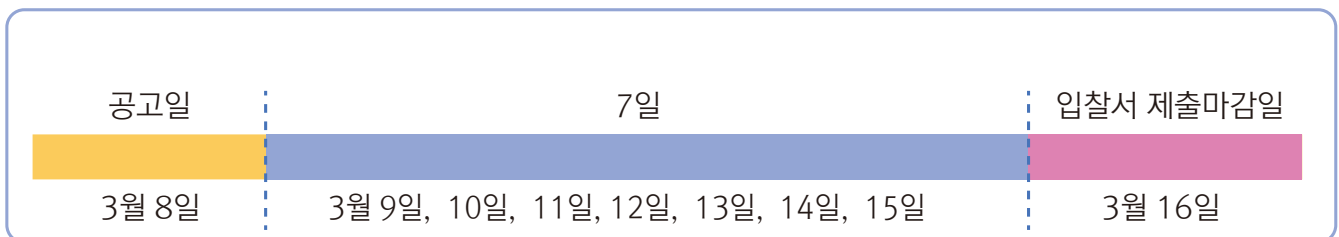
조 문	내 용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의 만료점)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지방계약법 기간 계산

가) 기본원칙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입찰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낙찰자결정방법·계약금액 등에 따라 공고기간이 다름

예시)



나) 계약 관련 기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함.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가 되도록 함)				
적격심사 평가기준일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적격심사 서류제출	공사·용역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난복구사업은 4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고시금액: 2.3억원 ²⁾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미만인 경우 또는 재난복구사업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적격심사 이의신청 (재심사 요청)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 신청기간: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재심사 실시
계약체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문서 도달 후 기산 10일
계약보증 기간	시작일은 계약체결일(착공일이 아님)로 하고,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초일 산입
선금보증 기간	시작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일 것				
착 공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착공일				초일 산입
검 사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일+14일)				초일 미산입 토·공휴일 포함
하자보증기간	시작일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 터로 하고,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계약서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				초일 산입
대가지급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

※ 통보(통지, 청구) 받은 날부터: 통보(통지, 청구) 받은 날은 미산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확인



계약의 종류

1 수입 및 지출에 따른 분류

가.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구분

구분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입찰의 성립	유효한 1인 이상	유효한 2인 이상
입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가격 낙찰자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 등
입찰보증금	필요(면제 가능)	필요(면제 가능)
계약보증금	대가를 일시에 선납받는 경우 불필요	필요
대가지급	선납원칙	계약이행 후 지급
예정가격	- 작성 - 일반재산인 경우 2인 이상 감정평가	- 작성 -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하자보증	불필요	필요
지연배상금	부과	부과

* 지정정보처리장치로 2인 이상 견적제출에 따른 수의계약: 입찰이 아니며 입찰보증금 대상이 아님

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교실, 체육관, 운동장, 매점 등 시설물 사용허가, 불용물품 매각 등

다.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계약 목적물별	경쟁 형태별	계약체결 형태별	낙찰자 결정방법별
• 공사계약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 - 국가유산수리공사 - 환경관련공사 등 • 용역계약 - 기술용역 - 학술용역 - 일반용역 • 물품계약(제조 및 구매)	• 경쟁입찰계약 - 일반입찰 - 제한입찰 - 지명입찰 • 수의계약 - 금액에 의한 구분 - 내용에 의한 구분	• 확정계약 / 개산계약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총액계약 / 단가계약 / 제3자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MAS) • 단년도계약 / 계속비계약 / 장기계속계약 / 단년도차수계약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종합계약	• 적격심사 낙찰제 • 희망수량 입찰 • 2단계 입찰 •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 종합평가 낙찰제 • 설계공모 • 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일괄입찰, 대안입찰

2

계약 목적물별 분류

가. 공사계약

- 1)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³⁾, 건축공사⁴⁾,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가) 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 나) 전문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2)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및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3)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 설비공사)
- 4)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소방시설을 신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

구분	분야	내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	-연면적 1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	-연면적 1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참고

- 5) 국가유산 수리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등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기타공사(석면해체·제거공사)

구분	관련법	자격요건	유의사항
석면해체·제거업	• 석면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석면해체·제거업 신고를 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공개 (S, A, B, C, D등급)

3) 토목공사 : 목재, 철재, 석재, 흙, 시멘트 따위를 이용하여 도로, 제방, 교량, 항만, 철도 등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온갖 공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4) 건축공사 :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거나 쌓아 만들

나. 용역계약

1) 용역 구분

구 분	내 용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 「주택법」에 의한 공사감리
학술용역	- 위탁형: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일반용역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

2) 일반 용역사례

구 분	내 용
시설물경비	기계경비용역[경비업법]
시설물 유지보수	- 컴퓨터 유지보수[정보통신공사법], 학내망 유지보수[소프트웨어진흥법] - 청소용역[공중위생관리법], 학교 교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감염병예방법] - 기계설비유지관리 용역[기계설비법]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승강기안전관리법] - 소방시설관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수조 청소[수도법], 정화조 청소[하수도법 시행규칙]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용역[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급식관련	음식물쓰레기, 폐식용유 수거[폐기물관리법]
육상운송	차량임차(통학버스, 현장체험학습 등)[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행	숙박업체 계약, 여행사 위탁 여행[관광진흥법]
교육	방과후학교 위탁[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다. 물품계약

1) 물품계약의 종류

구 분	내 용
물품구매	-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 제조업자, 도·소매업자(유통업자) 모두 계약 가능
물품제조	-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규격서나 설계서대로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 - 제조업자(공장등록증 소지자)와 계약 가능

3

경쟁 형태별 분류

가. 경쟁입찰 계약

1) 일반입찰(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 가) 일반입찰이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모든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임)
- 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다) 일반입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는 입찰참가자격 외에 기타 제한(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해서는 안 됨

《입찰 참가자격》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함
-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③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함

2) 제한입찰(법 제9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계약집행기준 제4장)

- 가) 제한입찰이란 지역, 시공능력, 계약실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나) 제한입찰의 종류와 요건

제한의 종류	계약 목적물	제한 요건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전문·그밖의 공사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용역	〈별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추정가격 2.3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용역	〈별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용역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전문·그밖의 공사
지역제한 ⁵⁾	공사	-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물품·용역 ⁶⁾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⁷⁾한 고시금액(3.5억)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엔지니어링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설비 제한	물품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물품납품능력	물품	특수한 성능,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한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	물품·용역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 이내로 제한(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해당 계약목적물 금액의 1배 이내로 제한

※ 〈별표〉는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별표〉의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5) 지역제한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소재지를 말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6) 시행규칙 제24조2호나목: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교육청 해당)의 경우에는 5억원

7)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터널공사 ②활주로공사 ③지하철공사 ④저수·유조하천공사, 수중작업을 수반하는공사 ⑤댐축조공사 ⑥취수장·정수장·유수지·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송·배수관공사 ⑧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 매립지 등연약지반 파일·우물통 공사를 수반하는공사 ⑩독크 축조공사 ⑪간척(방조제)·매립공사 ⑫항만법 제2조 항만시설공사, 어촌·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공사 ⑬장대교(길이100m이상)제작·가설공사 ⑭철도·철도궤도공사 ⑮정밀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기계 설치공사 ⑯ 발전·변전·송전·배전설비공사 ⑰ 전기철도·전차시설공사 ⑱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⑲ 신호집중제어·특수 제어장치 설치공사 ⑳ 자동신호·연동장치공사 ㉑ 원형차량감지기 설치공사 ㉒ 국가유산수리공사 ㉓ 차선도색공사 ㉔ 도로봉합제 이용 신축이음·균열보수공사 ㉕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㉖ 하수도 흡입준설공사 ㉗ 심정공사 ㉘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는 군사시설공사 ㉙ 하천환경정비사업 ㉚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 ① 스펀공법·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 ② 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제10호 관련)

- ①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②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 ㉑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 ㉒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㉓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 ③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다) 제한의 기본원칙

- 계약목적물 난이도, 규모의 대수,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범위 결정
- (원칙) 다음 각 호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제한 금지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④ 지역 ⑤ 설비 ⑥ 유자격자 명부 ⑦ 물품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창업기업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 + (①~②), 또는 ⑧~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중복제한 가능(예: 중소기업자 + 동일실적, 중소기업자 + 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 +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 설비제한 등)

- 지역제한 입찰 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구 분	본점 소재지
공 사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
용 역	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
물 품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 지역제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26. 10. 25. 부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함
- 지역제한 외 제한: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3) 지명입찰(법 제9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7조,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4절)

가) 지명입찰이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체결하는 계약

나) 지명입찰 대상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그 외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용역 추정가격 2억원, 물품 제조·구매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등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함

나. 수의계약

1) 근거

가) 법 제9조, 시행령 제25조~제32조, 시행규칙 제30조~제35조

나)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2) 개념

가) 1인 견적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의거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등)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체결하는 계약

다)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확실히 수의계약에 의할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이 불가능하거나 그 필연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함

3)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 요령

가)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대상

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견적서 제출방법
금액기준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 예외 ⁸⁾ (제6절 참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 대 상:

-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중

-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은 제외)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견적서 제출방법: -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 받음

-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 불가

■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8)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6절 및 1인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은 예외



TIP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 4)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수의계약 요령

구 분	내 용
안내공고	• 공고기간: 3일 이상(토,공휴일 제외) • 안내공고 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공고내용: 입찰 공고내용 준용
물량내역서, 과업설명서 게재 등	•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 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제출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함 • 공사 물량내역서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의무 ※ 물량내역서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예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 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구 분	내 용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	① 지역제한	다음 중 1가지로 제한 가능
	① 제한방법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에 한하여 자치구 또는 군을 대상으로 제한)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공사현장이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 지역(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함). 단, 해당 섬 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 지역으로 제한 불가 ②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 포함 가능) ③ “②”에도 불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함. 다만, 재난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함.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 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② 실적 등 제한	다음 중 1가지로 제한 가능
	①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②규격 ③재질·품질 ④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⑤장비·시설 보유상황 ⑥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⑦제조공장·처리장 ⑧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계약상대자 결정	③ 제한방법	- 지역제한 ①과 그 외의 제한 ②는 중복 제한 가능 -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박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 가능 ※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의 경우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제한 기준에 적합한 업체 현황 파악 필요
	-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단,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⁹⁾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¹⁰⁾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의 ‘각서’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 체결 가능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는 사업기간, 견적을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계약체결 이후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계약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 견적률(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 가능	

9) <별표1>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10) <별지1>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의 ‘각서’

나)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대상

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견적서 제출방법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예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여성기업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장애인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④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 ③~⑥의 경우 <별표 3>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확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 100			
근로자 인정기준	유급 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 고용)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25.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	2025.01.21	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	2025.01.22.	179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 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 기타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3. 고용노동부)에 따름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 수의계약 요령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다자간전자시담¹¹⁾ 방식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5개 업체 이상 권장)
- 1인견적 수의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시담방식 권장
- 계약금액 결정은 예산금액(예정가격)이하로서 견적가격,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 가격으로 함
※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 등 물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 추진에 유의
-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
-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 체결 가능

다)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금차 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 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 전력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 안전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특허·신기술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 해야 함

11) 다수의 견적제출 상대자를 지정하여 가격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하는 것을 다자간 전자시담이라 함

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 1)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2)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 3)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 4)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 5)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6)특허(특허 통상실시권 제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 품이 없는 경우
- 7)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8)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9)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0)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11)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12)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에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3)「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 14)「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15)「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 할 경우
- 16)「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1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 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 ⑪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 18)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19)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목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 20)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2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26)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2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29)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0)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3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32)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 33)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 3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군·구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3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 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Tip 입찰과 수의계약의 비교

구분		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여부		유	무
입찰(수의계약)성립요건		유효한 2인 이상 참여	2인수의: 유효한 2인 이상 참여 1인수의: 1인 참여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징수여부	징수	미 징수
	부정당업자 제재	제재 대상	제재 비대상 (단,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함)
차순위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시		부정당업자 제재	수의계약 배제 대상 아님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체결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차순위와의 계약 가능여부		불가	가능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 상대자의 견적을 적용)
지역제한 방법		시·도 제한	시·군·구 단위 제한 가능
본점(지점) 참여 여부		본점 참여	지점 참여 가능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필수사항	예외사항 있음
부정당업자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불가능	불가능
수의계약 배제자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Tip 시행규칙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 나목,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 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

4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가. 예정가격(계약금액)확정 여부

- 1) 확정계약: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지방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 체결
- 2) 개산계약: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중앙행정기관 등과 체결하는 계약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결 가능
- 3)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입찰 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잠정적으로 정한 후 계약 이행 이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계약

나. 총액여부

- 1) 총액입찰: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가격협상하여 체결하는 계약
- 2) 단가 계약: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공급·사용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단가로 체결하는 계약
 - 가)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대금정산 절차, 기준을 반드시 명시
 - 나) 계약 체결할 때 산출명세서 첨부, 계약이행에 따라 대가 지급,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
-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시·도 교육청이 하위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수요물품)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물품이 필요한 학교에서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대가를 지급하는 계약방법.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은 제외

다. 재원 및 사업기간별 분류

- 1) 단년도계약: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총액계약
- 2) 계속비계약: 총 예산이 확보된 경우 총금액으로 계약하며 동 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연장 가능
- 3) 장기계속계약: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하는 계약 (차수 계약체결, 총 공사금액 부기)
 - ※1회계연도를 넘기면 장기계속계약이며, 기간이 반드시 12개월 이상일 필요는 없음

라. 계약상대자별 분류

- 1) 단독계약: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 2) 공동계약: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TIP**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TIP** 종합계약

동일 장소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5

낙찰자 결정방법별 분류

가. 낙찰자 결정방법 개념

구 분		개 념	근거
희망수량입찰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시행령 제17조
2단계 입찰	가격·규격 분리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한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1단계로 규격(기술)입찰 실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해 2단계로 가격입찰 실시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시행령 제18조
	가격·규격 동시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가능한 결정 방법으로 유사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시행령 제24조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 (이행실적,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물품)일 경우, 적격심사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 우선 고려	시행령 제42조
종합평가 낙찰제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 점수를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시행령 제42조의3
설계공모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 용역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시행령 제42조의4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시행령 제43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계약 입찰대상자들과 계약 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 대화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	시행령 제44조의2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물품 제조·구매 계약시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시행령 제45조


TIP 2단계 입찰

- 개념

구 분	내 용
규격·가격 분리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렵거나 계약의 특성상 한 번의 입찰방식으로는 부적합할 때 규격(기술)입찰과 가격 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규격·가격 동시	2단계 입찰에서 별도 진행하는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하고, 가격개찰 과정에서 1단계 규격 입찰 통과자에 한해 2단계 가격입찰을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 (시행령 제18조 제3항)

- 공고기간

구 분	공고시기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공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
긴급 및 재공고입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

- 2단계 입찰 제외 대상(시행규칙 제23조의2)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 규격·가격 분리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비교

구분	입찰방식	입찰 유·무효	낙찰자 결정
규격·가격 분리	• 규격입찰을 먼저 실시 • 규격적격자 선정 • 규격적격자만을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 후 개찰	• 규격과 가격입찰 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함	최저가 낙찰
규격·가격 동시	•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 • 규격적격자 선정 • 규격적격자만을 대상으로 가격 개찰	• 동시 입찰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함 •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도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	최저가 낙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종류

구 분	지방계약법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사업법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근거법령	법 제26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계약주체	시·도 교육청	조달청
이용방법	별도 지정 사이트 없음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내 용	시·도 교육청이 하위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수요물품)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물품이 필요한 학교에서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 요구·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방법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이 물품별로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계약 방법
특 징	계약주체(교육청/조달청)가 이미 계약상대자(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두었기 때문에 제3자(학교 등)는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물품 납품요구 가능	



TIP

공동도급제도 비교(계약집행기준 제6장)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	출자비율로 구성 (2인 이상의 업체가 같은 일을 나누어서 수행)	분담내용으로 구성 (2인 이상의 업체가 다른 일을 각각의 면허 등에 따라 수행)	주계약자: 종합조정, 관리 및 분담시공부 계약자: 분담내용 시공 공고 시 전문 공종 비율 명시
대표자	공동수급체총괄관리	공동수급체총괄관리	주계약자 총괄관리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책임	구성원 각자책임(원칙) 단, 하자구분 곤란 경우 연대책임
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할 때 가능	각자 책임 하에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또는전문 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의무
실적인정	금액:출자비율로 인정 규모:실제 시공부분	분담시공 부분	주계약자: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표 1] 제1절 4-나-5), 6)에 따라 실적 인정 부계약자:분담시공 부분
이행불가인 경우	잔존구성원 이행 불가 시→ 새로운 구성원 추가	잔존구성원 이행 불가 시→ 새로운 구성원 추가	주계약자 탈퇴시: 새로운 주계약자 이행부 계약자 탈퇴시: 주계약자 이행
공고	공동도급이행방식 명시,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입찰 시 참여대상 업종, 업종비율 명시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지역업체 일정비율(40%이상) 이상 참여토록 공고(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 49%이하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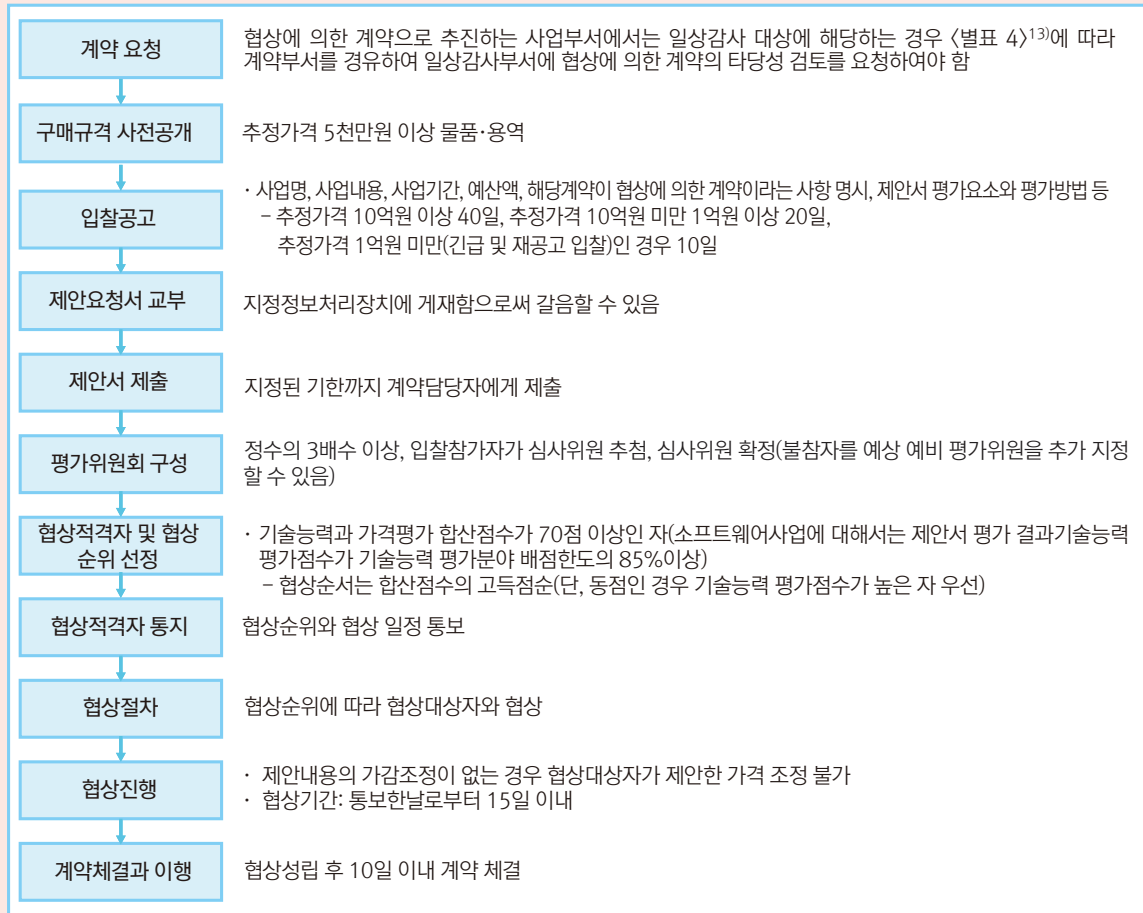
TIP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제44조)

- 물품·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가능
-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지식기반사업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 적용 가능

· 지식기반사업 등(시행령 제44조 제1항)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기념탑,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절차(낙찰자결정기준 제7장제3절¹²⁾)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28호, 2023. 6. 29.)

1.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사업부서)
2. 위원회 구성: 7명 이상 10명 이하(위원회 구성인원수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다른 시·도 위원 20% 이상 선정)
3. 위원 자격: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해당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평가기준: 예규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름
 - 공정성·객관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 마련
5. 평가결과 공개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 공개 해야 함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함)

12) 계약방법결정시 자체조달이 아닌 중앙조달일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13) <별표4>는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제3절

계약업무 절차

1

유형별 절차도



2

업무절차별 세부내용

가. 예산의 집행품의

- 1) 예산집행 품의: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2) 예산품의서 작성 요령
 - 가) 제목은 집행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
 - 나) 예산집행의 목적, 집행 예정액, 집행내역, 예산과목 적정성 확인
 - 다) 예산집행의 내용에 따라 회계부서와 협의
 - 라) 예산집행 예정금액이 예산액 범위 이내인지 여부 및 예산 배정 여부 확인
 - 마) 예산집행 예정금액이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나. 설계서 작성 및 추정가격 산정

- 1) 설계서 작성: 설계용역 또는 해당 업체에 견적요청 등으로 설계서 및 설계가격(조사가격) 작성
- 2) 추정가격 산정: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가격(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다. 계약방법의 결정

- 1) 계약방법 결정 순서
 - 가)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로 계약목적물 구분
 - 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방법 적용여부 검토
 - 다)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결정 및 2단계 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기타 계약방법 적용 여부 결정
 - 라)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등 계약체결 형태별 계약방법 결정
 - 마) 낙찰자 결정방법 결정
- 2)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입찰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재정경제부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자간 제한 입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입찰
 - 다) 기타 지방계약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검토

3) 공공구매제도: 각 부처의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제도

◆ 의무구매제품 종류 및 의무구매비율

구분	의무구매비율	근거	소관부처 및 사이트
중증장애인 생산품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1% 이상 (의무구매 비율 매년 확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0호) -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한국 장애인개발원 - 굚드래(http://www.goods.go.kr) - 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https://www.knnanumi.or.kr) - 장애인생산품 모아소 (http://www.1030mall.com)
중소기업 제품	물품·용역·공사 총 구매액의 50% 이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정보조회-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조회에서 조회
장애인 기업제품	물품·용역·공사 총 구매액의 1% 이상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공공기관 주요 서비스' 메뉴에서 조회 가능 - 드림365(https://dream365.or.kr)
여성기업 제품	물품: 물품 총구매액의 5% 이상 용역: 용역 총구매액의 5% 이상 공사: 공사 총구매액의 3% 이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제도과)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공공기관 주요서비스' 메뉴에서 조회 가능
기술개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5% 이상 (물품만 해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재정경제부(공공조달정책과)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공공기관 주요서비스' 메뉴에서 조회 가능
창업기업 제품	물품·용역·공사 총 구매액의 8% 이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과, 기업구조 개선과)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공공기관 주요서비스' 메뉴에서 조회 가능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0.8%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고용 노동부 고시) -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같이ilter 장애인표준사업장 (http://www.gachiilteo.or.kr)

구분	의무구매비율	근거	소관부처 및 사이트
인증신제품 (NEP)	구매하려는 품목에 신제품 (NEP)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20% 이상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 NEP인증신제품 사이트(http://www.buynp.or.kr)
녹색제품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구매이행계획에 따름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교육팀) -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구매)녹색사랑(http://www.greenproduct.kr/Mall) (구매)그린주의(https://www.greenjui.com)
사회적기업 제품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구매 촉진계획에 따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협동 조합제품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구매 촉진계획에 따름	-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기획예산처(상생협력전략과) (http://www.coop.go.kr)-협동조합현황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epp.or.kr)-우선구매실적/공공 조달-우선구매 공지사향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구매촉진계획에 따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 -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장애예술인 창작물	해당 연도 구매 창작물의 3%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https://www.kdac.or.kr)



TIP

장애인기업 제품 VS 중증장애인 생산품 VS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구분	장애인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지정요건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써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적용 제외)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이고,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경우 각 품목별 참여 장애인이 5명 이상이며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근로자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	장애인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인원 산정 기준 이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2))으로 고용
소관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의무구매비율	물품·용역·공사 총 구매액의 1% 이상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1% 이상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0.8%

4) 금액기준(추정가격)에 따른 계약방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5장)

구 분		수의계약		제한입찰 (경상남도)	일반입찰 (전국)
		1인 견적 제출 가능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7일~40일	
			공고: 3일 이상 (토,공휴일 제외)		
공사	종합	2천만 원 이하	4억 원 이하	150억 원 미만	제한 없음
	전문		2억 원 이하	10억 원 미만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10억 원 미만	
용역	일반용역		1억원 이하	5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3.3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용역			1.5억 원 미만	
	물품제조·구매			5억 원 미만	

라.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 공개대상: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 포함) 또는 농·축·수산물

2) 공개기간: 5일(긴급 시 3일)

3) 공개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 공개

4) 공개내용: 물품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용역의 경우-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등

5) 업체의견 반영: 계약담당자는 규격 사전공개 결과 관련 업체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함

마. 입찰공고(법 제10조, 시행령 제19조, 제33조~제36조)

- 1) 입찰의 성립: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입찰로 성립
- 2) 공고의 구분

구 분	내 용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기한을 제외한 입찰조건 변경 불가
정정공고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단,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새로(운) 공고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하는 공고(이 경우 조건 변경 가능)

3) 공고의 내용(시행령 제36조)

순	명시해야 할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제42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
15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순	명시해야 할 사항
20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및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

4) 공고일 및 공고기간

가) 공고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

나) 입찰공고의 시기(시행령 제35조)

구 분		공고 시기
물품 및 용역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
공사(현장설명 ○)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
공사 (현장설명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전에 공고
	추정가격 50억이상 고시금액 미만(265억원) ¹⁴⁾ 인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
재공고입찰 및 긴급 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공고
2단계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대화방식에 의한 계약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공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
	재공고입찰 및 긴급 시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

재공고입찰 및 긴급 공고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분	내 용
공고 게시시간	공고일 24:00 이전까지 공고
전자입찰서 제출시간	전자입찰 시작시간부터 마감시간까지 최소 48시간 이상 부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	근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찰일시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

14)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확인(행정안전부)

다) 공고기간 계산: 공고게시일(1일) + 【공고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1일)

라) 공고 내용의 우선순위(시행규칙 제36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함

바. 입찰참가

1) 입찰 참가자격(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나) 제한입찰(지역제한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것

다)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

라)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면허 등이 취소된 자(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제한기간이 만료되면 참가할 수 있음),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보증금 납부(법 제12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 시행규칙 제41조)

가) 보증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경제위기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동안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음)

나) 납부기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납부

다) 납부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인 경우 통상 각서만 징구하고 납부면제 처리

3)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 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4) 서류확인: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여부를 확인해야 함

5) 입찰무효(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 제외)
-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다른 입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일 때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계약의 방법(절차)을 위반한 입찰
-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기술제한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그 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사. 적격심사

1) 근거

가) 시행령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마)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바)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사)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아)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자)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차) 경상남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교육청)

2) 개념

가) 낙찰자 결정시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적인 요소인 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나)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 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3) 적격심사 범위 및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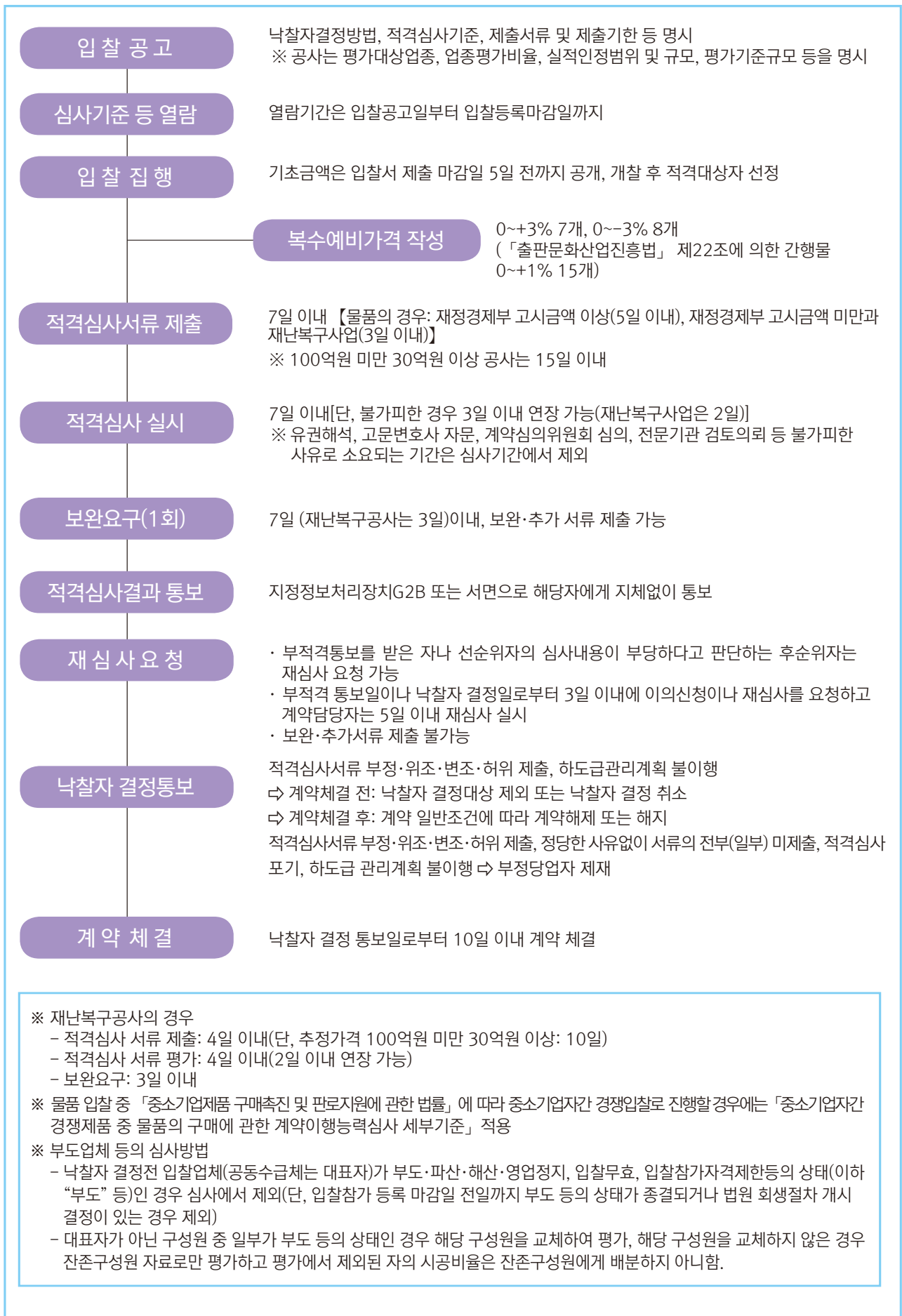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공사	일괄입찰, 대안입찰, 300억원 이상 공사, 건설기술공모(발주자 선택사항) 대상공사를 제외한 입찰로 집행한 모든 공사
물품	입찰로 집행한 물품 제조·구매
용역	입찰로 집행한 용역

4) 적격심사요령 및 절차

가) 적격심사 요령

- 입찰공고에 실적인정범위, 실적인정규모, 평가기준규모, 평가대상업종, 업종평가비율, 서류제출기한 등을 명시
- 개찰 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 입찰가격 이외에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이 불가능한 선순 위업체는 자동 탈락 통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평점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결정 결과는 G2B 또는 서면으로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는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에 이의가 있는 후순위자는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5일 이내에 재심사 실시
-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기후에너지 환경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나) 적격심사 절차



5) 적격심사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제출서류 - G2B에서 첨부파일로 증빙자료 제출 가능 -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계약이행 중 하도급 업체나 하도급 금액 등 변경 시 변경계획 제출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공사	• 시공경험(실적증명서 등), 기술능력(기술자 보유증명 등), 경영상태(감사보고서, 경영상태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각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기술인력(기술자보유증명서)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확인서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도급 시: 자본금(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 도급 시: 시설·장비(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시공여유율(재난복구공사)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자료	
용역	• 이행실적 (용역이행실적증명 등), 기술능력(기술자보유증명, 기술자보유현황, 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경영상태(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감사보고서), 기술인력(기술자보유증명서), 신인도(평가증명서류 등)	기술용역
	• 이행실적(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경영상태(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감사보고서), 기술인력(기술자보유증명서),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등)	일반용역
	• 그 밖의 제출서류	
물품	• 이행실적(물품이행실적증명서 등), 기술능력(기술자보유증명,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등), 시설·장비보유(공장등록증명원 등),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품질보증, 기술·디자인 인증보유, 환경관리, 사후관리, 평가 증빙서류 등)	
	• 그 밖의 제출서류	

제1장 계약일반

제2장 공사계약

제3장 용역계약

제4장 물품계약

제5장 Q&A

제6장 주요감사지적사례

아. 낙찰자 결정

구분	비 고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용역·물품 세부 기준에서 정한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결과 해당자에게 서면 또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지체없이 통지)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정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3절 6. 기한(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 공사는 3일))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시행령 제92조) [비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순위 업체만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포기 시 수의계약 배제 처분하며, 새로운 공고를 하지 않고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차순위자 부터는 계약포기시 수의계약 배제 처분하지 않음)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 • 부정당업자 확인 후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 2단계 입찰: 규격 또는 기술적격자에 한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 절차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부정당업자 확인 후 낙찰자 선정



제4절

계약 체결·이행 및 대가 지급

제1장 계약일반

제2장 공사계약

제3장 용역계약

제4장 물품계약

제5장 Q&A

제6장 주요감사지적사례

1

계약 체결

가. 근거

- 1) 법 제14조~제15조, 시행령 제49조~제54조, 시행규칙 제47조~제64조
- 2)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4장~제7장, 제9장~제11장

나. 기한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 문서의 종류

- 1) 계약서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등)를 이용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계약서 작성
- 2) 입찰유의서
- 3) 계약 일반조건
- 4) 계약 특수조건 (필요 시)
- 5) 설계서(공사), 규격서(물품), 과업설명서(용역)
- 6) 산출내역서 등

라.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 1)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
-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단,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서류를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받아야 함

마. 계약보증금

- 1) 보증금액: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의 10% 이상

- 2) 납부수단: 현금,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
3)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구 분	내 용
대 상	•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2에 규정된 자와의 계약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 구입이 곤란한 경우
지급확약서 징구	•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징구

바.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

- 1) 적용대상: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 제조 계약
※ 물품 단순구매(급식 식재료, 도서 등)는 인지세 비과세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등은 비과세
3) 인지세액

과 세 문 서	금액별 구간	세 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계약금액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유권해석, 국세청(2012)》

【질의】 물품 구매계약 인지세 과세 여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되어 있고,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를 인지세 과세 문서로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을 통하여 도·소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인지 여부

【답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도 시중 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따라서, 단순한 물품 구매는 인지세 비과세이지만, 물품에 ‘서울특별시’라는 표시를 새겨서 납품하거나 제조하여 납품하는 물품 구매는 인지세 과세 대상임

사. 국민주택채권 매입(「주택도시금융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매입대상	세부범위	매입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 ※ 도급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 및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계약금액의 1/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아. 계약서류의 작성

구 분	내 용	예 외	관련규정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	-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47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전자계약서)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외(서면 가능)	
날인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 포함) 함으로써 확정됨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입찰서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은 무효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5)
	회계문서상의 날인은 공인인증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영에 의한 날인으로 함	50만원 이하의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행사참석 여비,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50조

구 분	내 용	예 외	관련규정
날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어야 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3절 5.
간인 (間印)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사용인장으로 간인(間印)해야 함	서명의 경우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10.
증빙서류 원본주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 서류는 원본에 한함	부득이한 경우 증명책임자가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48조

2

계약의 이행 및 대가 지급

가. 착공 및 착수

1) 공사의 착공(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가) 착공일자: 계약서에 정한 날짜

나) 착공신고서 제출

착공신고서 제출 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출내역서 ②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③ 공사공정예정표 ④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⑤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⑥ 착공 전 현장사진 ⑦ 직접시공계획서(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⑧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퇴직공제부금 가입증서 ⑪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⑫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보서(전기공사) ⑬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⑭ 공사 전기·수도료 사용료 관련 각서 ⑮ 하도급계약 통보서(필요시) ⑯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필요시) |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①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 ② 대상: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건설공사는 생략 가능)
- ③ 제출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④ 제출방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의함
- ⑤ 직접시공 비율(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총 노무비 중)

계약금액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직접시공 비율	5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신고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 용역의 착수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가) 착수일자: 계약서에 정한 날짜
- 나) 착수신고서 제출

착수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 ① 용역공정예정표 ②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③ 산출내역서 ④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 신고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선금지급(「지방회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념

- 가) 선금이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금의 일부로,
- 나) 공사·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물품 구매는 제외)

2) 지급범위

- 가)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계약상대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신청을 강제할 수 없음
- 나) 최초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나 계약상대자가 의무지급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함
- 다) 최초 선금 신청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선금 지급 가능하며, 추가 지급을 포함한 선금 누적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음
-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용역에서는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해야 함

3) 선금지급의 예외

-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
- 다)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4) 선금의 지급시기 및 구비서류 등

구분	선금 신청	선금 청구	선금 지급	선금 정산
시 기	- 계약이행 전 - 기성대가 지급 전	선금 지급결정 통보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기성(기납)대가 지급시
구 비 서 류 등	- 선금신청서 - 선금지급각서 - 선금사용계획서 -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 포함	- 선금 청구서 - 선금보증서 - 보증기간: 선금지급일 이전~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보증금액: 선금액+ 약정이자 상당액 - 선금전용 통장사본 - 전용계좌 사용 확인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세금계산서	- 공동도급의 경우 선금 신청 및 지급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 제출서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선금 신청 서류 - 지급방법: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예시) 총 계약금액이 100원인 계약에서, 선금이 50원 지급되었고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이 8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산식에 따라 선금정산액 40원이 [선금정산액 = 50*(80/100)]정산되어야 하므로, 정산 후 기성대가 지급액은 40원이 됨 ∴ 총 지급액: 90원 (선금 50원+기성금 40원)

5) 선금 사용관리

- 가)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
- 나) 확인 결과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 위·변조, 허위로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을 청구해야 함
-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함
- 라) 선금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됨

다. 계약금액의 조정(법 제22조, 시행령 제73조~제75조의2, 시행규칙 제72조~제74조의2, 계약집행기준 제9장)

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가) 조정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되고 물가변동률이 3%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조정방법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로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로 조정
 - 품목조정률: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정한 후 물가 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 지수조정률: 각 비목군(노무비,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 표준시장단가 등)에 해당하는 산출내역 서상의 금액이 순 공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비목군 별로 지수조정률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

가) 설계서: 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과소 산정 등을 이유로는 계약조정 불가

다) 설계변경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5. 위 3, 4의 규정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설계변경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한 후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변경

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단가) 조정 방법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및 원가계산 검토 의뢰
 - 총사업비 200억↑ 공사 중 설계변경 15억↑ 증가인 경우 ⇨ 조달청 검토 의뢰
 - 계약금액 20억↑ 공사 중 설계변경 10%↑ 증가인 경우 ⇨ 외부전문기관¹⁵⁾ 검토 의뢰
 - 신규비목의 단가: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시행령 제74조)
- ※ "상호 협의"라 함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는 것을 말함

1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

3) 과업내용(용역)의 변경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및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한 변경

4) 수량조절(물품의 제조·구매)로 변경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물품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수량변경 할 수 있음) 변경

5) 기타 계약내용 변경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6) 계약기간 변경

동절기 공사 중지, 하절기 우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

7) 계약상대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등의 변경

8) 변경계약 시 구비서류

변경계약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금액 또는 기간연장 등), 수정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변경) 및 도면(변경), 선금급보증보험증권(금액 또는 기간연장), 인지세 및 국민주택채권(계약금액 조정으로 추가 징수분이 있을 경우)

라. 지연배상금(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

1) 부과사유 및 납부방법

가) 공사·용역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기일을 경과하고도 준공(완수)하지 못한 경우

나) 물품계약의 경우: 납품기한 내 해당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다) 납부방법: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2) 계산방법: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¹⁶⁾ × 지연일수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산정

준공(완료·납품)계 제출일	지체일수
• 준공(완료·납품)기한 내 준공(완료·납품)신고서 제출	- 준공(완료·납품)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때에는 시정조치한 날부터 최종 준공(완료·납품)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 준공(완료·납품)기한 후 준공(완료·납품)신고서 제출	- 준공(완료·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준공(완료·납품)검사일까지
• 준공(완료·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발주기관의 휴무일 포함)인 경우	-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지체일수 산정

※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가능

16) 계약금액: 계약서상 계약금액(변경계약 한 경우 변경계약 금액)

감액적용: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계약금액 산출 시 제외함

3) 자연배상금률

구분	세부대상	자연배상금률
공사	모든 공사	0.5/1000
용역	용역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 제외)	1.3/1000
물품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1.3/1000
	물품의 제조·구매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0.8/1000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로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	0.5/1000
기타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2.5/1000
	그 밖의 계약	1.3/1000

마.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91조, 계약집행기준 제9장)

1) 계약의 해제·해지 구분

가) 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함

- 해제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약정해지권)이나 법률의 규정(법정해제권)에 의해 발생함
-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원상회복의무와 귀책사유 있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지방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보증금)이 발생함
- 계약의 해제권은 계약의 해지와 반대로 일시적 계약에 대해 발생

나)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임대차, 고용 등)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계약 해지 시까지 임대료 지급 등의 행위는 유효)

2)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구분	해제·해지 사유	후속조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 조치한 경우 • 자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인 경우¹⁷⁾ •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 • 청렴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	• 계약담당자: 기성 인수 시 대가 지급 • 계약상대자: 자재철거·반환, 선금 반환(이자가산)
사정변경	•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계약담당자(14일 이내) ① 기성 인수 시 대가 지급 및 인력·장비 철수 비용 ② 계약보증금 반환
계약상대자의 청구	• 계약금액이 30/100이상 감소한 경우 •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공기의 40/100 초과한 경우	• 계약상대자: 선금 반환(이자 미가산)

17)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자연배상금은 병과하지 않음

3) 계약의 해제·해지 방법

가) 민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해제·해지가 가능함

나) 계약 이행 독촉(최고)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최소 3회 이상 독촉(소송 시 계약상대자를 최대한 배려한 측면이 인정됨.)
-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의 가액에 도달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 이행 독촉(최고)은 납품 기한이 경과한 2~3일 후 즉시 시행함

다) 계약 해제·해지 후 계약담당공무원 조치사항

-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학교는 해당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바. 검사

1) 공사·용역의 검사(법 제17조, 시행령 제64조, 제65조)

가) 계약상대자의 준공기한 내 준공(완수)신고서 제출

나) 준공(완수)신고서 접수

다) 준공(완수)검사: 준공(완수)신고서 접수 14일 이내 검사

- 시정조치(보완 지시)
 - 사유: 계약내용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 시정조치 완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기간(14일)을 계산
- 준공(완수)검사조서 작성(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 생략 가능)

2) 물품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내 납품검사원 제출

나) 납품검사원 접수

다) 납품검사: 납품검사원 접수 14일 이내 검사

- 시정조치
 - 사유: 계약내용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 시정조치 완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기간(14일)을 계산
- 납품검사조서 작성(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 생략 가능)

사. 계약의 담보책임

1) 담보책임(법 제20조, 시행령 제69조, 제70조, 계약집행기준 제9장~11장)

가) 개념

- 계약상대자가 목적물을 준공한 후 일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동안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제도

나) 주요 내용

- 검사주체
 - (원칙) 사업담당자
 - (예외) 하자검사 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시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

다) 존속기간

-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
- 공종 간 하자책임 구분이 어려운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함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기간을 정함.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차 계약 체결 시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해 정함

2) 하자보수보증금(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제72조, 계약집행기준 제9장)

가) 개념

-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준공(물품의 납품, 용역의 완수)한 후 일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동안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나) 주요 내용

- 기준
 -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2/100 이상 10/100 이하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고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동안 보관
- 납부면제(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 제4항)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의 자와 계약하는 경우
 - ☞ 하자보증금 지급 확약서(각서)를 징구하여야 함
-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 제1항,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 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 ☞ 하자보증금 지급 확약서(각서)를 징구 할 수 있음

· 하자보수보증금률(시행규칙 제70조)

구분	내 용	보증금률
공사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5/100
	2. 공항, 항만, 석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4/100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3/10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사 외의 공사	2/100
물품	1. 제조	3/100
	2. 수리, 가공, 구매	2/100
용역	모든 용역	2/100

아. 대가의 지급(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1) 대가의 지급

가) 지급시기: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

나) 지급기한:

-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토·공휴일 제외). 단,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는 3일 이내 지급
-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특약설정 가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사유가 소멸된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 지급
- 대가 지급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 반송 가능
-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자 지급

$$\text{이자} = \text{미지급금} \times \text{대가지급지연일수} \times \text{연체이자율}^{18)}$$

2) 기성대가의 지급

- 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이 경우 대가 지급시에는 검사 완료 이전 대가지급 청구 가능)
- 나) 검사완료일부 5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
- 다)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

18)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3)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 ① 대금청구서
- ② 세금계산서
- ③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 ⑤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 ⑥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 ⑦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⑧ (하자보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서
- ⑨ (공사 하도급의 경우) 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⑩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 필요한 채권 확보
- ⑪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⑫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3

계약과정의 공개(법 제43조, 시행령 124조,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가. 공개내용

-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 나라장터 연계 공개
- 2)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의 내용: 지정정보처리장치 연계 공개
- 3) 개찰의 결과: 지정정보처리장치 연계 공개
-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 K에듀파인 연계 공개
 - 가) 계약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상대자명
 -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K에듀파인 연계 공개
-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K에듀파인 연계 공개
- 7) 대가의 지급현황: K에듀파인 연계 공개
 - ※ 공개경로: 누리집 > 정보공개 > 계약정보

나. 수의계약 내역 공개(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 시 <공개내역서> 첨부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가능
- 3)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8. 계약정보의 공개” 준용
- 4)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계약정보의 공개로 같음함(별도 공개 불요)
- 5) K-에듀과인 계약상대자 입력시 대표자명, 주소, 업체연락처 기재 필수

다. 공개기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제5절

계약관련 기타사항

1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가.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 구분

구분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
개념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의 계약 집행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
법령	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에 게재 - 나라장터>로그인>공통>조달업체정보>부정당업자 조회	- 발주기관이 직접 등록 (K에듀파인에 게재) - K에듀파인 > 계약관리 > 계약업체관리 > 수의계약 배제업체관리
계약체결 제한대상	전 공공기관과 모든 계약(입찰·수의)을 체결할 수 없음	- 경상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공립 학교)과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만 체결할 수 없음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에 수의계약 배제 효력 있음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전 G2B 등에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 확인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제재정지 중”으로 표기된 것은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체결 전 반드시 K에듀파인의 [수의계약 배제업체관리]에서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 해당여부 확인 ※수의계약 배제 기간의 시작일 전까지는 계약체결 가능 ※사립학교가 등록한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는 공립학교에 효력 없음 ※공립학교가 등록한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는 사립학교에 효력 없음
※ 계약체결 이후 처분 받은 부정당 제재나 수의계약 배제는 계약의 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부정당업자 제재

-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법 제31조의2, 시행령 제92조의2~제92조의4, 시행규칙 제77조의2

나) 제재대상: 입찰자, 전자견적 제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계약상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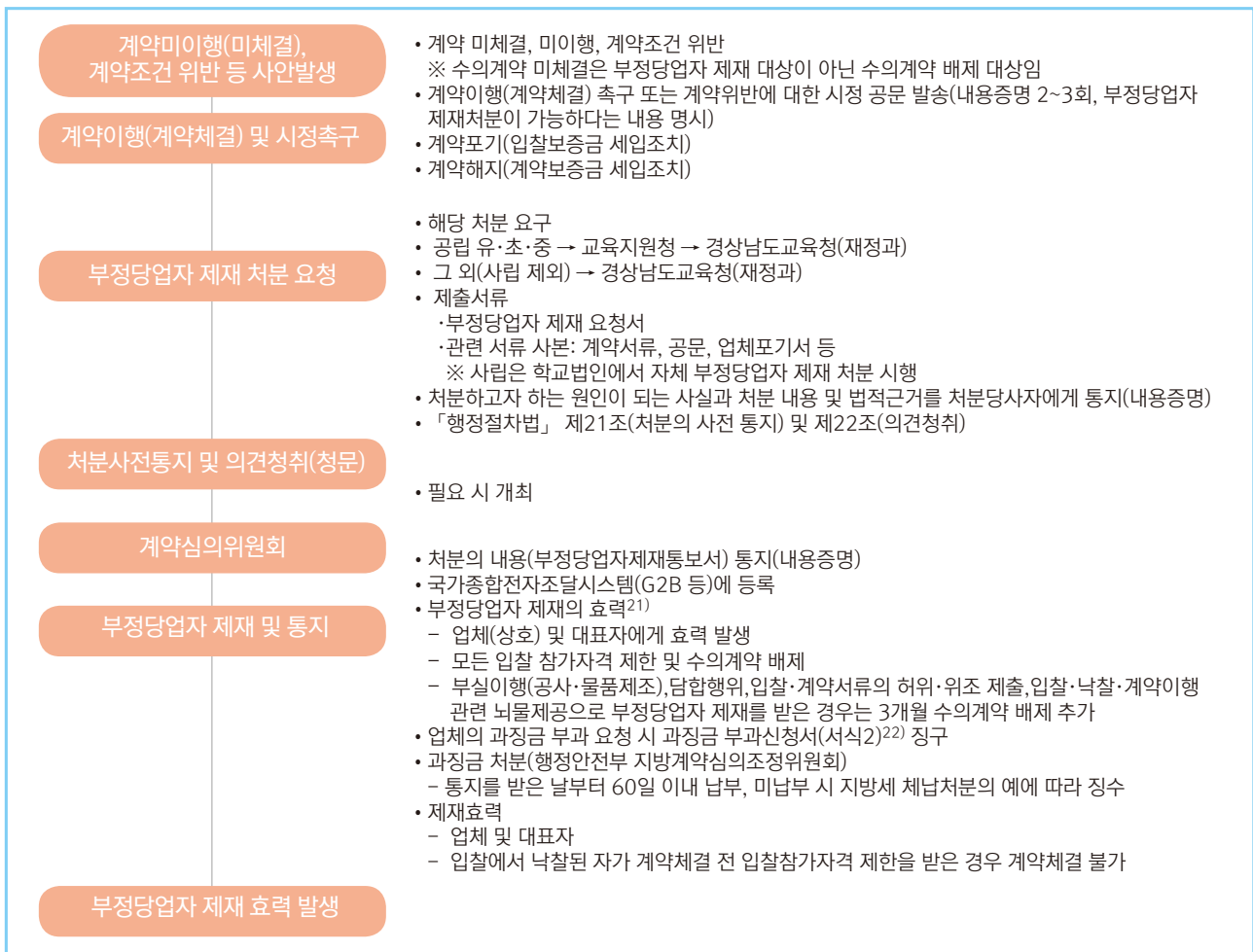
제한대상		부정당업자		과징금 ¹⁹⁾
호	법 제31조 제1항	제재기간	심의 ²⁰⁾	
1	계약 이행을 부실·조작,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년 이하	○	1~30%
2	입찰담합한 자 등	5개월~2년 이하	○	15~30%
3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 등	3개월~1년1개월 미만	×	4~20%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개월~2년 이하	○	15~30%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5개월~7개월 미만	×	9%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5개월~7개월 미만	×	9%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3개월~2년 이하	○	4.5~30%
8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5개월~7개월 미만	○	9%
목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제재기간	심의	과징금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5개월 ~1년1개월 미만	○	9~15%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5개월~7개월 미만	○	9%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2개월~4개월 미만	×	1.5~4.5%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2개월~4개월 미만	×	1.5~4.5%
바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2개월~4개월 미만	○	1.5~4.5%
사	실시설계자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개월~4개월 미만	×	1.5~4.5%
목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제재기간	심의	과징금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개월~7개월 미만	×	0.5~9%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2개월~7개월 미만	○	9%

19)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시행령 제92조의2)

20)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제한대상		부정당업자		과징금
목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제재기간	심의	
다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개월~7개월 미만	○	9%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2개월~4개월 미만	×	4.5%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7개월~9개월 미만	○	4~12%
목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제재기간	심의	과징금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5개월~1년7개월 미만	○	6~30%
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1개월~3개월 미만	○	1.5~4.5%

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흐름도



21)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인 계약은 유효함

22) 과징금 부과 신청서(p76 참고)

3) 과징금 제도

가) 계약상대자 등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나) 근거법령: 법 제31조~제31조의2, 시행령 제92조의2~제92조의4, 시행규칙 제77조의2

4)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관련 공문(예시)

제목

시설공사 독려 및 만회공정표 제출

대외시행 (수신: (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와 관련하여 20○○.○○.○○. 착공 시 제출 한 예정공정표에 따르면 현재 00% 공정률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실제 00%의 공정률에 불과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됨으로 공사추진을 독려하며 공사 지연에 대한 사유와 만회 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20○○.○○.○○.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준공완료 기한까지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4. 계약 미이행 또는 계약 불이행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제목

○○ 납품 독촉

대외시행 (수신: (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학교와 20○○.○○.○○. 계약 체결한 ‘정보화기기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기한이 20○○.○○.○○.이었으나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납품하시기 바랍니다.
3.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검수 완료일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어 경상남도교육청 및 산하 공립기관(공립 학교 등)과 3개월 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4. 또한 납품을 하지 않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제목

20○○학년도 ○○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이행 촉구

대외시행 (수신: (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체결한 20○○ 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귀 사에서 경영 상태 악화로 인해 20○○.○○.○○. 자 차량 운행을 중단한다고 통보받은 바, 우리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귀 사의 경영정상화를 바라며, 남은 계약기간까지 계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계약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목 2000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해지

내부결재

1. 관련 : 00학교-00(2000.00.00.)호 및 00학교-00(2000.00.00.)호
2. 2000.00.00.자로 체결한 「2000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자: 주식회사 00 대표 000
나. 계약해지 사유: 업체 계약 포기
다. 향후 계획: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별도 계획에 의함)

붙임 계약포기서 1부. 끝.

제목 계약 해지 통지(2000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내용증명

대외시행 (수신: (주)0000)

1. 관련
가. 00학교-00(2000.00.00.) “2000학년도 00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이행 촉구”
나. 00학교-00(2000.00.00.) “2000학년도 00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이행 촉구(2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2. 우리학교에서 발주하여 2000.00.00.자로 계약 체결한 「2000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에 대하여 귀 사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약 해지 함을 통지합니다.
가. 계약명: 2000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나. 계약금액: 금00,000,000원(금몇천몇백몇십몇만몇천몇백몇십원)
다. 계약일자:
라. 계약해지일자:
3.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제목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요청

대외시행 (수신: (주)0000)

1. 관련: 00학교-00(2000.00.00.) “계약 해지 통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명: 2000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나. 계약금액: 금00,000,000원(금몇천몇백몇십몇만몇천몇백몇십원)
다. 계약보증금: 금0,000,000원(계약금액의 10%)
라. 납부계좌번호: 000-000-0000(농협, 예금주: 00학교)
마. 입금기한: 2000.00.00. 끝.
3. 입금기한까지 미 입금시 보증기관으로 청구하여 00학교회계로 세입 처리하겠습니다. 끝.

제목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요청(보증회사)

대외시행(수신: ○○보증보험주식회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 자로 주식회사 ○○과 체결하였던 「20○○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에 대하여 업체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20○○.○○.○○.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납부요청을 하였으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계약보증금을 청구합니다.
 가. 보증서(증권)번호 :
 나. 계약보증금액 : 금0,000,000원(금몇백몇십몇만몇천몇백몇십원)
 다. 계좌번호 : 000-000-0000(농협, 예금주: ○○학교)

- 붙임 1. 계약해지 공문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외시행(수신: 교육(지원)청)

1. 관련: ○○학교-○○(20○○.○○.○○.)
2. 우리 학교에서 20○○.○.○○.자에 체결한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체의 사정으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20○○.○.○○.자로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요청합니다.

- 붙임 1.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서식1) 1부.
 2. 입찰공고문 외 개찰관련 자료 1부.
 3. (업체)계약포기서 1부.
 4.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와 부정당업자 제재 안내 공문 등. 끝.

붙임 1

○ ○ 학 교

우편번호 · 주소: 50000 경상남도 ○○시 ○○로
(전화번호) 055-000-0000 담당자: ○○○

문서번호: ○○학교-0000
발 신 일: 20○○. ○○. ○○.
수 신: 경상남도 ○○교육지원청
참 조:
제 목: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제출

부 정 당 업 자 제 재 확 인 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 소	경상남도 ○○시 ○○로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경상남도 ○○시 ○○로		
제 재 내 용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면허·등록번호 등	
	제 재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항 제○호		
	해약연월일	20○○. ○○. ○○.		
	제재연월일		만료연월일	
	제 재 기 간	. . . ~		

- 위 업체는 ○○학교의 ○○용역계약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 (계약일자: 20○○.○○.○○, 계약금액: 금 원)한 자임
- 본교는 계약체결 이후에 위 업체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이행 촉구하는 공문을 2회(20○○.○○.○○. 및 20○○.○○.○○.) 발송함. 위 업체는 동 공문을 20○○.○○.○○.(1차), 20○○.○○.○○.(2차)에 수령하였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20○○.○○.○○.에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하였음.
-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항 제○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됨
(그 밖의 참고사항 기재)

○○학교장 (인)

서식 5-1

과 징 금 부 과 신 청 서

징수의무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과 징 금 부 과 신 청 내 역

과징금 대상 금액	과징금 부과율	과징금	비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0.00.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다. 수의계약 배제(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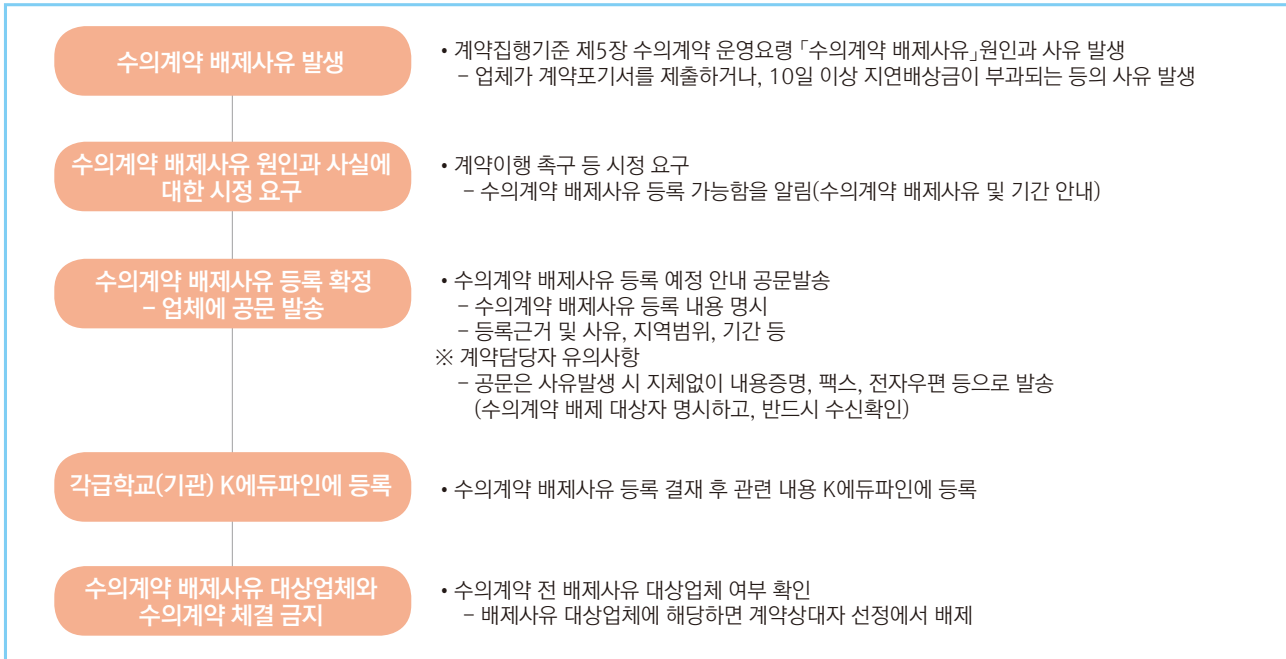
1) 수의계약 배제 사유 및 기간: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참조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 수의계약 배제 절차 흐름도



3) 수의계약 배제 절차 관련 공문(예시)

제목 ○○ 구입계약 계약체결 촉구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 안내

대외시행 (수신: (주)○○○)

-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공고번호 20○○-○○(20○○. ○○. ○○. 개찰)건에 대하여, 귀 사에 20○○. ○○. ○○.로 낙찰자 결정을 통보를 하였으나 20○○. ○○.○○.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어 20○○.○○. ○○.까지 계약에 응하지 않을 시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배제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어 경상남도교육청 및 산하공립기관(공립학교 등)과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끝.

제목 수의계약 배제 등록 알림

대외시행 (수신: (주)○○○)

- 관련: ○○학교-○○(20○○.○○.○○.)
- 위 호로 귀 사에 계약체결을 촉구하였으나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가. 수의계약 배제기간: 3개월 (20○○.○○.○○. ~ 20○○.○○.○○.)
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다. 수의계약 배제범위: 경상남도교육청 및 산하 공립기관(공립학교 등)과 수의계약(수의견적공고 포함)을 체결할 수 없음. 끝.

제목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내부결재

1. 관련: ○○학교-○○(20○○.○○.○○.)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등록대상	시작일자	만료일자	배제 근거 및 사유
(주)○○○ 대표 ○○○	20○○. ○○.○○.	20○○. ○○.○○.	• 근거: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제⑥항 • 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나. 등록방법: K에듀파인 > 재무회계 > 계약관리 > 계약업체관리 > 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

- 붙임 1. 수의계약 배제 등록(예정) 등록 알림 공문 1부.
2. 내용증명서 수취 확인 1부. 끝.

2

압류 및 공탁

가. 채권압류의 종류

구분	의의 및 관련규정
가압류 결정	• 의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 • 가압류 결정 후 본 압류명령이 도달해야 압류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 •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 지급될 임금채권은 압류대상에서 제외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 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임금채권은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근로기준법」 제38조)
압류 명령	• 의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집행 법원의 결정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발생(도교육청 송달일 임) • 채무자의 채권양도나 제3채무자의 변제는 압류명령에 대항하지 못함
추심 명령	•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 •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부 명령	• 의의: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무자는 변제한 것으로 확정 • 전부명령은 송달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 다른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무자가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 공사대금의 경우 전부명령이 도달하여 확정되면 납세증명서 등을 징구하고 대가지급

나. 압류의 경합

경 합		우 선 순 위
국세와 근로복지공단 압류	근로복지공단 압류 먼저 송달	① 근로복지공단의 체납처분비·가산금 ② 국세 ③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국세 압류 먼저 송달	① 국세 ② 근로복지공단 체납처분비·가산금·보험료
국세와 추심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 먼저 송달	① 국세 ② 추심명령
	전부명령 먼저 송달	① 전부명령 ② 국세
압류 및 전부명령이 최우선 송달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채권액내에서 단독으로 지급가능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압류가 존재		전부명령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추심명령으로 간주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징수절차에 대해서만 국세체납의 예에 따르므로 공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압류명령		먼저 송달된 곳이 우선순위를 가짐

※ 개별 사안마다 판례의 해석이 상이함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대가지급 시점까지 가압류 채권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면 공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압류채권의 공탁

1	채권압류 접수	• 사건2020카단 0000 채권가압류 창원지방법원결정 • 도교육청(재정과)에서 채권가압류결정문 송부																								
2	준공(기성)금에 대한 경합 및 공탁 여부 결정 (내부결재)	1. 관련: 준공(기성)금 청구건, 도교육청 채권가압류 결정문 송부 2. 계약금액: 3. 기지급금액: 4. 금회지급금액: 5. 지급내역 <table><tr><th>연번</th><th>지급처</th><th>지급계좌</th><th>예금주</th><th>지급금액</th><th>비 고</th></tr><tr><td>1</td><td>000</td><td></td><td></td><td></td><td>원도금</td></tr><tr><td>2</td><td>세외(별단예금보관)</td><td></td><td></td><td></td><td>공탁처리사유 별도기재</td></tr><tr><td>3</td><td>***</td><td></td><td></td><td></td><td>하도금</td></tr></table> 6. 공탁처리 사유: 위 관련대호에 의거(000가압류건이 경합하여)공탁처리 하고자 함 7. 공탁금액 내역: 금 원 ※(계약금액)-(기지급대금)=(잔액) 중 해당액	연번	지급처	지급계좌	예금주	지급금액	비 고	1	000				원도금	2	세외(별단예금보관)				공탁처리사유 별도기재	3	***				하도금
연번	지급처	지급계좌	예금주	지급금액	비 고																					
1	000				원도금																					
2	세외(별단예금보관)				공탁처리사유 별도기재																					
3	***				하도금																					
3	공탁서 작성 및 의뢰	공탁 관련서류 작성 또는 의뢰(법무사)																								
4	채권압류금(공사) 공탁서 발급 요청 (학교 ⇨ 교육감)	우리교육청에서 발주한 000공사의 채권압류 보관금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거 공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탁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1. 공탁대상 채권압류자: 2. 공탁금액: 금 원 불임 공탁관련 제반서류²³⁾ 2부(인편제출). 끝																								

23) 공탁서, 공탁사유신고서, 위임장,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원본대조필) 등 서류

5	공탁서 발급 (교육감 ⇨ 학교)	1. 관련: ○○○공탁서 발급 2. ○○○ 공사 채권압류금에 대한 공탁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발급하오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무자: ○○○○ 나. 공탁금액: 금 원 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지원 라. 채권자 내역: 공탁서 참조 마. 공탁자(제3채무자): 경상남도교육감 ○○○ 바. 공탁대리인: 법무사 ○○○ (주소:) 붙임 1. 공탁서 1부 2. 위임장 1부 3. 사유신고서1부. 끝.
6	채권압류 보관금 지출(공탁의뢰)	공탁금액 = 원금+이자수입-(공탁수수료) 지출처: ○○법무사
7	공탁접수(법무사)	공탁번호: 년 금 제0000호 (접수일자:) 공탁금액: 원(이자포함)
8	공탁접수결과통보	법무사→학교

☞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세입 업무편람」 및 「채권관리 실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증명 및 확인사항

가.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1) 도급자가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도급자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2) 양도·양수한 경우는 양도·양수인 모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3) 전부명령에 의해 대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는 채권자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4) 하도급 직접지급 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자와 원도급자 모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5)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나. 4대보험 납부 증명 및 확인사항

- 1) 대 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
- 2) 시행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2015. 12. 2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2016.8.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완납증명(2023. 7. 3.)
- 3) 관계 법령: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70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같은 법시행령 제47조의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의 5
- 4) 납부 증명 제외 범위
 - 가) 일상경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또는 관서운영비로 지급받는 계약
 - 나) 기타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고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제출이 면제되며, 각종 계약실적 등록 및 공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 지출 행위 등
- 5) 납부 증명서 유효 기간: 납부 증명서 발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기일(매월 10일)을 초과하면 납부 증명의 효력이 없음
 - 가) 2026.2.10.에 발급된 납부 증명서 ⇨ 2026.2.10.까지 유효
 - 나) 2026.2.11.에 발급된 납부 증명서 ⇨ 2026.3.10.까지 유효



TIP

주요 질의 및 답변

질의: 리스회사가 공공기관 등에 매월 리스료를 납부 받을 때도 납부 증명서를 매 대금 수령 시 제출해야 하는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 모든 계약이 그 대상이 되므로, 리스회사는 기 제출한 납부 증명서의 효력이 다할 경우, 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납부 증명서를 제출²⁴⁾해야 함

질의: 월 2회 이상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장의 경우 매 대가를 지급받을 때마다 별도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납부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까지의 체납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므로 발급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납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질의: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대표가 만 60세가 넘어 연금수령자인 경우 납부 사실 증명 방법은?

→ 대표자가 연금수령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체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입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로 미가입 사실을 증명하거나, 공단에서 체납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급

질의: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의 경우 납부 증명서 발급 방법은?

→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의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모두의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질의: 워크숍 때 사용할 현수막을 제작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도 납부 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 계약서 작성이 없고,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생략된 일상적인 거래 행위라면 납부 증명서 제출 대상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

질의: 납부 증명서 제출 시점과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어 월을 달리 할 경우, 추가로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계약 대금 지급 시점 기준에 유효한 납부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하므로, 납부 증명서 발급일 이후 납부기한(매월 10일)이 지났다면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24) 증명서 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한 체납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하여 납부(완납)사실 확인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업로드하여야 함

제5장 질의·답변



제1절 공사계약 질의·답변

제2절 용역계약 질의·답변

제3절 물품계약 질의·답변



제1절

공사계약 질의·답변

1. 나라장터 개찰결과 정정 예시

질의

공고문 내용은 낙찰율 89.745%로 하였으나 G2B 시스템입력을 최저가로 잘못 입력하여 개찰하였을 경우 정정방법이 있는지?

답변

나라장터/e-고객센터/공지사항/“기관별공지사항”란 게시

- 개찰결과 정정공지(예시)
- 입찰공고번호: ○○○○○○○○-○○
- 입찰공고명: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 개찰일시: 2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금64,130,000원
- 정정사유: 위 견적건에 대하여 견적공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공고문 내용(낙찰율 89.745%)과 G2B 시스템입력 내용(최저가 낙찰)을 상이하게 등록하는 착오가 발생한 바 당해개찰결과를 정정함.
- 정정내용(개찰결과)

정정 전 1순위				정정 후 1순위			
업체명	대표자	투찰금액	투찰률	업체명	대표자	투찰금액	투찰률
○○○	○○○	55,156,270	86%	○○○	○○○	57,554,110	89.746%

2. 공사에정금액에 포함되는 관급자재

질의

- 가.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에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은 전문면허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 예정금액이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
- 나. 건축공사 원가계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에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가 포함되는지?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답변

-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공사예정금액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
 - 따라서 전문공사 1천5백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만원에 적용되는 공사예정금액에는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발주자가 재료 제공)만 해당되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포함되지 않음

3.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

질의

창호설치공사를 위한 추정가격이 1천2백만원으로 원가계산 되었고, 자재(창호)는 나라장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4백만원 상당 구매한다면 창호설치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공사예정금액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도급자설치관급자재)에는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추정가격 1천2백만원 + 부가가치세 1백2십만원 + 창호 4백만원 = 1천7백2십만원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함. 따라서 전문건설공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발주하여야 함.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

질의

도장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8백만원이며 공사기간은 10일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지?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됨.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따라서 8백만원 공사일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료는 적용제외(건설업자가 시공시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적용대상임

5. 고용·산재보험 사후정산 여부

질의

공사 도급업체에서 산재보험료 신고를 당초 계약금액으로 사업장 신고를 하고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변경된 금액으로 가입신고를 한 후에 사후정산해야 하는지?

답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라 산재보험료 신고 성립일은 계약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 사업자 명칭 등이 변경 되었을 때는 변경 된 사항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도급금액의 변경은 변경신고의 대상은 되지 않음. 또한 공사업체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확정된금액에 따라 납부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초에 확정하여 납부함.
 - 따라서 변경된 금액만큼 변경계약 시 보험요율 적용하여 증액 계상하고 준공계 제출 시 완납증명서를 확인하면 됨.
- (※고용·산재보험은 사후 정산하지 않음.)

6.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방법

질의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함.
-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규정을 준용함(단, 직접 노무비 대상 여부 확인 필요)

7. 계약이행 중 영업정지처분

질의

계약이행 중(착공 후)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공사에 대하여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음.
 - 다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자)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답변

- 한편,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8. 하도급승인 시 검토사항

질의 하도급 통보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답변

-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직접시공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 의무하도급을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 미달하는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서는 소정의 서식인지 여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첨부서류의 누락은 없는지 여부(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하도급계약의 통지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발생 시 이에 관한 문서(직불동의서 등) 첨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능 여부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3. 입찰공고시 안내할 사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의한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10. 법인 변경등기(주소변경)관련 입찰의 무효 해당 여부

질의 지역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당일에 주소변경 등기가 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 무효인지 여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2-가”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어야 함
- 한편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8), 15)”에 따르면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입찰유의서”를 준용하고,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업체 해당 여부는 입찰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재지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할 것임

11.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등과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여성기업 수의계약(2~5천만원)이 가능하나, 공사계약의 경우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2~5천만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 시행령 제25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규정인 반면,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몇 명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임.
-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서는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와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기업 등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같은 조의 다른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문은 시설공사, 물품의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공사계약인 경우에도 여성기업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

12. 식별용 안전조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대상 인정 여부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근로자 식별용 안전조끼 지급으로 정산을 신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한 사용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의 안전조끼가 현장 내 특정공정 근로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공사장비 등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한 식별용 조끼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산업재해 예방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단순히 공정별 근로자 식별을 위해 지급하는 조끼,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13.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의무 여부

질의 소규모 전기공사도 시공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개정전 전기공사업법에도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며, 2023년 개정된 전기공사업법(제17조) 및 2024년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제12조의2)에는 ‘시공관리책임자 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주기관은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및 통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공사규모 등에 따른 지정 예외 규정은 없음)

제1장 계약일반

제2장 공사계약

제3장 용역계약

제4장 물품계약

제5장 Q&A

제6장 주요감사지적사례



제2절

용역계약 질의·답변

1. 면세사업자 입찰참가 시 투찰금액 산정

질의

일반용역 입찰(교재개발)공고를 올렸습니다.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입찰 참여업체 중 비과세 대상업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인 경우, 그 업체가 입찰금액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에 대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인 181,818,181원 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200,000,000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 공고 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제한입찰의 범위

질의

각급 학교에서 제주도 수학여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개입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 중에

1. 입찰자격을 중복으로 제한하여(지역제한, 실적제한, 재무상태제한 등) 입찰 자격에서 중복 제한을 두어 중소기업이나 지방에 있는 여행사들이 실제로 입찰을 못하고 있고,
2. 실적제한에서 과다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3. 재무상태 제한으로 국내여행업 등록은 5천만원 이상이면 등록이 되는데 국내여행업으로 명시하고 자본금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의 기준에 의하여 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1-나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 중 2개 항목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①동일실적 ②지역제한 등을 동시에 제한하는 것은 중복 제한에 해당됨. ※ 재무상태는 제한기준에 없는 항목임.

3. 여행업의 과세

질의 수학여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답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 간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

-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교와 별도 구분 계약없이 전체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 숙박비 등 모두 포함된 금액)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학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등의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항공료 등은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여행사는 당해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학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알선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국세청 답변자료〉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기로 한 여행알선수수료 등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384, 2004. 11. 25.),(부가 46015-1296, 2000. 6. 2.)

4. 수학여행시 직영계약 및 위탁계약

질의 수학여행 용역을 차량임차계약, 숙박계약, 식당계약 등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직영계약과 일괄위탁계약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한 바와 같이 차량임차계약 등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을 직영계약이라 하고 전체를 일괄하여 여행사 등에 위탁하는 것을 위탁계약이라고 함.

- 직영으로 계약 시 숙박비+식비, 숙박비+식비+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고 추정가격에 대한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인 건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
- 일괄 위탁 시에는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인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위탁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숙박, 식사, 운송 등 별도로 수행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중간 알선행위로 금지해야 할 사항임. 또한 직영 운영 시 특정업체와 계약을 위한 편법적 분할계약은 금지되어 있음.

5.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에서의 입찰 유효 여부

질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에서 규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미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이 유효한지?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을 실시하는 경우, 규격입찰서를 가격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무효인 입찰자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6.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시 제안서 평가 여부

질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다시 유찰되었기에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할 경우 당초 입찰 시에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유찰되는 경우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내용에 유찰원인이 있는지 검토하여 재공고입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협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 등을 변경하여 다시 새로운 입찰을 하는 등 다른 계약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실제 자치단체의 협상계약 사례에서 참가조건 또는 과업내용을 지나치게 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없자 곧바로 수의계약 한 경우 신분상 징계조치 된 경우가 있음.

7. 확정계약에서 용역 완료 후 정산 가능 여부

질의

입찰을 통해 확정계약이 이루어진 용역계약에서 과업이 완료된 이후,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직접경비(인쇄비, 회의비, 조사비 등)에 대해서 감액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낙찰된 총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임. 다만, 지방계약법령 상 대가를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제 89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이나 다른 관련 법령에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함.
- 따라서, 확정계약인 경우에 사후정산은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한정되므로 계약금액에 대한 별도의 사후정산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이외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고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8. 2인 수의용역계약 공고시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가능 여부

질의

8천만원의 2인 수의 용역계약 공고를 올릴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해야 하는지?

답변

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의 경우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또한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생략 가능함.

9.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과 수의 용역계약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용역계약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된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의 경우, 입찰에 관한 규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및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 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을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안됨.



제3절

물품계약 질의·답변

1. 지체 10일 이상은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계약 후 지연배상금을 10일 이상 부과한 경우 수의 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답변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5항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계약 후 지연배상금을 10일 이상부과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질의

- 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용역(중소기업자간의 우선조달제도 일반제품)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자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나. 추정가격 1억원 ~ 2.3억원 미만 물품·용역(중소기업자간의 우선조달제도 일반제품)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와의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하여야 함.

질의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업체 및 품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상대자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물품구매입찰의 경우, 3개 품목을 각각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각각 선정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계약에 있어 입찰의 입찰무효 해당 여부?

답변

- 물품제조·구매 입찰에 있어 제한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 상황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으로

답변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으로 제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 질의와 같이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품목 및 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답변

「판로지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입찰 참여요건(허가, 인가, 면허 등 자격요건 등)
- 입찰(수의계약) 참가자격 확인요령
 - 확인방법: 중소기업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 중소기업자확인: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자
 - 직접생산확인: 해당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자

질의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반드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학교)에서 임의로 적용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바,
- 「판로지원법」은 지방계약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지방계약법에 우선하여적용하여야 하며,
- 따라서, 「판로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벤처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 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3.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기초금액 상향조정 불가

질의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나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기초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의계약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으나,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정한 가격과 그 밖의 이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답변

-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9.에 의거 재공고입찰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격(기초금액)을 변경(당초입찰시보다 상향조정)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정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실시하여야 함을 유의

4. 1순위 계약포기 시 2순위와 계약 가능**질의**

2인 이상 수의계약 공고를 통해 선정된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2순위 업체 계약 가능 여부

답변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 제출안내 공고 후 개찰결과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과 2단계 입찰의 차이**질의**

물품구매에 있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조달청 쇼핑몰)과 2단계 입찰(일반입찰)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물품에 한하여 나라장터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조달구매 방식이며,
- 2단계 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입찰 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 개찰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거나,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하여 규격(기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하는 방법으로 이는 일반입찰에 해당됨

6.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물품 우선구매**질의**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체결된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매하지 않고,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입찰(총액입찰)을 통해 구입이 가능한지?

답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달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하 '제3자단가계약 물품'이라 함)이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으로,

답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과 계약체결된 제3자단가계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구매 요청하여야 하는 바,
-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 규격 물품이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구매 하여야 함
- 그러나 조달물품과 규격이 상이하고, 수요기관의 특수한 사정 상 입찰로 진행하여 구입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정 정보처리장치(G2B, S2B 등)를 이용하여 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방식 또는 입찰을 실시하여 구매할 수도 있음

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질의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고 동일업체에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하여야 하나 원하는 물품이 등록된 업체가 1개 업체 밖에 없으면 어떻게 구매해야 하나요?

답변

구매대상 물품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고,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종합쇼핑몰에 계약된 업체가 1개사 밖에 없다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는 불가할 것임. 해당 물품의 경우는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찰 등의 과정을 통해 구매해야 할 것임 (조달청 2011.10.27)

질의

교무실 현대화 사업으로 교사용 책·결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구입비 6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가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므로 총구입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요청이 불가함

8.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질의

비영리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답변

중소기업에 해당됨. 비영리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함

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고시금액 미만 비경쟁제품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려면 유찰은 몇 회가 되어야 하는지?

답변

1회 유찰 후부터 참가자격 제한하지 않고 새로운 공고 가능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9. 도서 구입

질의

도서구입 입찰공고를 하면서 특수조건으로 도서구입비 외 도서정리 소모품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DB구축비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집행 가능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되어야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 물품에 해당되는 도서를 구입하면서 DB구축 등 용역을 포함한 특약을 정하여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물품과 용역을 공동 수급하여 참가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임

질의

수입도서 및 외국에서 발행된 CD 구매 시 가격할인은 10% 이내 인지?

답변

국내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수입도서 및 외국에서 발행된 CD의 가격할인율은 10% 이내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화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⑥ 법 제22조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 국내판매 목적여부 판단기준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의 답변

: ISBN 코드를 발급받았다면 국내 출판목적임. ISBN 코드 발급여부는 해당 출판사에 확인

(Tip: 대부분의 국내 유통도서는 ISBN코드가 등록되어 가격정가제에 해당)

10. 1천만원 미만 경쟁제품 대기업에서 구매 가능 여부

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기업과 계약하여 구매해도 되는지?

답변

- 판로지원법 제7조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하여야 함. 다만,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구매 계약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익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즉,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대기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답변

-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여야 하므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여야 함.
- ※ 다만 ‘중소기업제품’의 정의 등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임

11. 세부품명 2개 이상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사항 여부

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가구류 구매시 모든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1억원 이상으로서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 공고를 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에 참여한 업체와 단독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 ※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2단계 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제1항
- “수요기관의 장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의2 제1항 및 동 규정 [별첨 1]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구류에 대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제안을 허용하여야 한다”

12. 중소기업제조 제품과 공급 제품이 혼재한 5천만원 초과 물품 쇼핑몰 바로 구매 가능 여부

질의

강당 방송장비를 교체하게 되었는데, 총 구매액은 5천4백만원입니다.

1. 비디오프로젝터(세부품명 1개): 1,300만원(일반제품, 중소기업공급 제품)(다수공급자계약)
 2. 나머지 제품(세부품명 15개): 4,100만원(경쟁제품, 중소기업제조 제품)(다수공급자계약)입니다.
- 제조 물품과 공급 물품이 혼재하면서 1회 구매 예산을 합산하여 5천4백만원인데 모두 쇼핑몰에서 바로구입해도 되는지?

답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물품에 대하여
- ※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단,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 예외적으로 1억원 미만인 경우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규정 제49조제6항에 따라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 질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급물품이 포함되어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이므로 전체 물품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 제안요청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예산(세목에 편성된 전체예산)

답변

〈2단계경쟁 대상〉

수요물자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② 중소기업 제조 품목		
③ 그 외 (중소기업 공급, 대기업 등)		5천만원 이상
혼합 구매시	① + ②	1억원 이상
	① + ③, ② + ③, ① + ② + ③	1억원 이상

※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을 통합하여 구매가능한 예산

※ 혼합구매시: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다수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낮은 기준금액 적용

〈통합구매가 필요한 예산과목 기준〉

수요기관 유형	예산과목 기준	예산과목 상이기준
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세목	세목, 통계목 이상의 예산과목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	통계목	
그 밖의 수요기관	세목, 통계목에 대응되는 과목	

※ 예산과목이 동일하여 한 번에 예산지출이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 필요 (분할구매 안됨)

〈2단계경쟁 회피 차단〉

- (2단계 회피금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안됨

- 이전 구매금액과 현재 구매예정금액의 합계 (30일 이내 동일 업체의 동일 세부품명 구매건)가 2단계경쟁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납품요구 차단

→ 차단되지 않은 건도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에 따라 2단계경쟁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련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제51조

제6장 주요감사 지적사례



제1절 계약방법 결정 및 사전이행 절차에서 지적된 사례

제2절 입찰(견적)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

제3절 계약 이행 및 검사 검수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

제4절 대가 지급 및 이후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

제5절 기타 지적 사례



제1절

계약방법 결정 및 사전이행 절차에서 지적된 사례

1

분할·분리 계약 검토 소홀

• 사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전문공사의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00.00.에 계약한 ‘○○○○ 공사’와 0000.00.00.에 계약한 ‘○○○○○ 공사’를 시행하면서 두 건을 통합하여 일반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하지 아니하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되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시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아야 하고,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 교체 및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 구입과 설치로 분할하여 총 2건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예정가격(기초금액, 원가계산) 작성 소홀

• 사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 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역서에 분명하게 적고,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리공단에 신고 후 착공 시 가입증명원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자는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에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도급+도급자관급)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에 따라 계상하고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에 사용계획은 착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에 적용이 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가 공사내역서에 계상되었는지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원가계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여야 하며, 모든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준공일: 0000. 0. 0.)’를 시행하면서 산재·고용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총 5건의 공사에 대한 공사 원가계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사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계약담당자는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업체로부터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0000학년도 ○○○○ 용역 계약’을 진행하면서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기초금액을 작성하였다.

• 사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계약담당자는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에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산출 근거를 조사·검토하여 이를 작성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년 ○○○○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시행하면서 해당 용역의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과업지시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가격 없이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

• 사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수익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2절(수익계약 유형별 구분)에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1인 수익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고, 원가계산자료에 의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여성기업과 1인 수익계약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 (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0000.0.0.)에 대해 설계서 작성 시 물량산출서에 의해 계산된 물량을 공사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물량산출서의 조립말비계 외 1종의 물량을 부당하게 공사내역서에 미반영 또는 감 조정하여 반영함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원가계산하여 여성기업과 1인 수익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계약방법결정 업무 소홀

• 사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익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수익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수익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익계약 운영요령)에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1인 수익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구매(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를 일반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1인 수익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계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수익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수익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수익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인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000학년도 ○○○○ 용역(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인 용역임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1인 수익계약을 체결하였다.

4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 소홀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에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에서도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0000학년도 ○○○○ 전기·통신·소방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준공일: 0000. 0. 00.)’를 시행하면서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았다.

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 발주 업무 소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준공일: 0000. 0. 0.)’를 집행하면서 건설폐기물의 양이 184.84톤으로 설계가 되어 100톤 이상인데도,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고 건설공사 내역에 포함하여 공사를 계약하고 준공 처리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 발주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6

물품선정위원회 업무 소홀

• 사례 1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경상남도교육청, 2022. 2.)에 품목당 구매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제품 또는 규격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품목당 구매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제품(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구매(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 등 총 8건의 물품 계약에 대하여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제품(규격)을 선정하지 않았다.

• 사례 2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경상남도교육청, 2022. 2.)에 품목당 구매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단가 5백만원 이상의 제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에, 다득점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전자문서 등록 후에 원본은 지출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품목당 구매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을 선정하여야 하고, 단가 5백만원 이상의 제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 결과 다득점한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참석 위원의 날인을(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받아 전자문서로 등록하고 원본은 지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구입(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의 제품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하였고, ‘○○○○ 구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단가가 5백만원 이상인데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제품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에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지 않아 위원이 실제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등록하지 않는 등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7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업무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 하여야 하고,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이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은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 하여야 하며, 직접구매 대상 외 품목도 품질확보 등 필요시 관급자재로 설계하여 직접구매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개선」(경상남도교육청, 2024. 11.) 지침에 따라 품목당 구매예정금액(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구매를하고, (우수조달제품) 1억원 이상인 경우 경우 가상입찰 또는 선정위원회 결정(3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대상기준 미만이라도 관급자재 구매가 필요할 시 「공사용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기준」(경상남도교육청, 2024. 11.)을 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관급자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품목을 선정할 경우, 「공사용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기준」(경상남도교육청, 2024. 11.)에 따라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로 참여하고 설계용역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대하여 5개 이상의 제안서(업체가 5개 미만일 때에는 예외)를 제출받아 관급자재 평가표에 해당되는 객관적 평가기준(④~⑧) 자료를 작성하여 선정위원회 회의 시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 및 서기는 참여위원 등록부, 관급자재 평가표 집계, 관급자재 평가표,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내부결재)로 등록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급자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결정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하여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공사용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기준」(경상남도교육청, 2024. 11.)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급자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급자재 선정위원회의 기준인원 수 5명보다 적은 4명으로 구성하였고, 간사를 위원으로 포함시켰으며, 위원장을 호선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매예정 관급자재(○○○○외 5종)의 규격(사양)에 적합한 품목 2개 사의 카달로그(견적서 포함)를 평가하여 ○○○○ 제품으로 선정하였으나, 선정 이후 공사 현장이 해당제품의 하중을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 다시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초 제시되었던 2개업체의 제안서만을 재평가하여 2순위였던 ○○○○ 제품으로 변경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1차 선정위원회 회의자료(등록부·회의록·결과보고서 등록, 평가표 미등록)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2차 선정위원회 회의자료는 등록을 누락하는 등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8

구매규격 사전공개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용역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제1항에 사전공개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용역(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입찰 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등 총 4건의 용역 계약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예비명부 작성 및 위원 선정)에 발주기관의 장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며,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추첨에서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에서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고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추첨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년‘○○○○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0000. 0. 00.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선출을 위한 추첨을 실시한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여 연장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연장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지 않았고,

예비평가위원 그룹 중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첨을 실시하여 6명의 빈도 수가 동일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통보하지 않아, 평가 당일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



제2절

입찰(견적)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

1

공고 기간 설정 업무 소홀

• 사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공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계약담당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공고일: 0000. 00. 00., 기초금액: 00,000,000원)’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으면서 공고기간을 2일로 설정하는 등 총 4건의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설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사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긴급한 경우 등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긴급]○○○○ 공사(기초금액: 0,000,000,000원, 공고일: 0000. 0. 0., 개찰일: 0000. 0. 00.)’입찰을 진행하면서 5일 이상을 공고하지 않는 등 총 3건의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진행하면서 공고기간을 잘못 설정하였다.

• 사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제3항 및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구매 2단계 입찰을 실시할 때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 ○○○○구매(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0. 0.)’ 2단계 입찰 공고를 진행하면서, 입찰 공고일을 법령에서 정한 입찰공고 기간보다 3일 짧게 공고하였다.

2

낙찰하한율 설정 업무 소홀

• 사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을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 ○○○○구매 소액수의 공고(기초금액: 00,000,000원, 공고일: 0000. 0. 00., 개찰일: 0000. 0. 00.)’를 진행하면서 3일 이상을 공고하지 않았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데도 낙찰하한율을 88%로 설정하는 등 총 10건의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진행하면서 공고기간과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하였다.

• 사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 $90-20 \times |(88/100-\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이므로, 이에 따른 낙찰하한율은 87.74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 $90-20 \times |(88/100-\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으로 하고, 낙찰하한율은 87.745%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 용역’ 입찰업무를 진행하면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임에도 낙찰하한율을 87.745%이 아닌 87.995%로 잘못 적용하였다.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 소홀

• 사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7호에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은 축산물판매업 중 우유류판매업자가 할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학교우유급식 입찰의 경우,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 우유 급식 소액수익(단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진행하면서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등 총 2건의 우유 급식 수익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 사례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고,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려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에서는 ‘○○○○ 개보수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준공예정일: 0000. 0. 00.)’를 시행하면서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이고,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철거, 칸막이, 수장공사로 구성된 전문공사이므로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자격 제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사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에 도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남도교육청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 준공일: 0000. 0. 00.)’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데도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례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물품의 구매 시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물품 구매를 지역제한 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 구매’를 2단계(규격·가격 동시) 지역제한 입찰로 진행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가 아닌 ‘경상남도 진주시’로 제한하였다.

• 사례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을 지역제한 입찰에 의할 경우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지역제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자: 0000. 0. 0., 준공일자: 0000. 0. 0.)를 시행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경상남도’로 제한하여 공고하여야 함에도 ‘창원시’로 제한하여 나라장터(G2B)에 공고 하였다.

4

계약보증금(각서) 징구 소홀

• 사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에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이상을 내게 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에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계약관련 서류 간소화 및 일원화 방안」 공문에 따라 기존 10종 서류를 1종의 통합서약서로 대체 가능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이행각서 및 계약보증금(계약보증지급각서)을 제출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학년도 ○○○○용역(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자: 0000.0.00.)’ 계약을 체결하면서 5천만원이 초과하는데도 계약보증금 제출받지 아니하고, 청렴이행각서도 제출받지 않았다.

• 사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에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이나 공사이행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증가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 계약보증금을 납부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를 시행하면서 0000. 0. 00.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0,000,000원 증액되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받거나 계약보증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총 2건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음에도 추가 계약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5 적격심사 등 낙찰자 결정 업무 소홀

• 사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입찰의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 용역’ 입찰을 진행하면서 종합평점을 95점이 아닌 90점을 부여하였고, 적격심사 대상 입찰임에도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0000~0000학년도에 총 2건의 용역입찰을 진행하면서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사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는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사항에 같은 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 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 안에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가격개찰 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받아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적격통과 점수가 미달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자료를 보완·추가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공고일: 0000. 00. 00., 개찰일: 0000. 0. 0.,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0000. 0. 0., 낙찰자결정일: 0000. 0. 0., 계약체결일: 0000. 0. 0. 계약금액: 000,000,000원)’가격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제출받은 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을 위한 기술자보유현황(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건설기술인이 해당 등록기준이 미달되는데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완·요구하지 않았고, 감점하지 않고 평가하여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되는데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 사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및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추정가격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입찰공사 항목별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구분	1. 수행능력 평가	2. 입찰가격 평가	계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시공 경험(10점) + 경영상태(10점) = 20점	80점	100점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시공 경험(5점) + 경영상태(5점) = 10점	90점	100점
	기타 기준은 기재 생략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 입찰을 할 경우 추정가격 기준에 따른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자: 0000. 0. 00., 준공일자: 0000. 0. 0.)’계약을 추진하면서 해당 공사는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임에도, 0000. 0. 00.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였고, 해당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 사례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경상남도(경상남도 및 시군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등(정보통신용역을 포함한다)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2023. 1. 30. 시행)」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별표 1]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특별신인도 중 실적은 최근 5년간으로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19-1523호, 폐지일: 2023. 1. 30.)」은 이 세부기준 시행 동시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2023. 1. 30.이후 일반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2023. 1. 30. 시행)」을 적용하여야 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으로 특별신인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 용역 안내 공고(공고일: 0000. 0. 0., 기초금액: 000,000,000)’을 입찰에 부치면서 개정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2023. 1. 30. 시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지된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신인도 실적을 잘못 적용하여 공고하는 등 0000 ~ 0000년도까지 총 2건의 통학버스 입찰 용역 입찰 시 폐지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공고하였다.

6

특정 규격·모델·상표 지정

•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물품 구매 입찰공고 시 사양서 등에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 구입 수의계약 안내공고(기초금액: 00,000,000원, 공고일: 0000. 00. 00.)’에서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공개하였다.

• 사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의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0000, 0000년 학교급식기본계획」(경상남도교육청) ‘식재료 구매 시 계약 관계 법령 준수’에 식재료를

구매할 때에는 현품설명서의 품목별 규격란에 단수로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혜소지의 오해가 없도록 당위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공산품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 단수로 특정상표 지정 가능 하되, 품질·성능·조건 면에서 동등 이상의 다수 상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다수 상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년부터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급식 식재료 구매를 위한 현품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상세내역에 ‘치킨까스’라는 제품을 ‘아몬드 용가리 치킨까스’라는 단수로 특정하는 등 총 130건에 대하여 특정 제품을 단수와 복수로 지정 구매하는 등 식자재 규격 지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7

인지세 납부 확인 업무 소홀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및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의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2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였는데도 인지세 납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8

건설공사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 업무 소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4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매입기준에 건설공사는 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되,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계약금액의 1/1,000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의 1/1,000을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입하여야 하고,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 준공일: 0000. 0. 00.)’를 시행하면서 0000. 0. 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00,000,000원 증액되었는데도 국민주택채권 추가 부분을 매입하지 않는 등 총 4건의 변경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

9

미대상 지역개발채권 매입 영수증 징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경상남도조례)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는 등 총 2건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영수증을 징구하였다.

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계약 소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공공기관의 장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경쟁제품에 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5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침구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자간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등 구입’계약(계약일: 0000. 0. 0., 계약금액: 00,000,000원)을 하면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일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1천만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침구류)임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물품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제3절

계약 이행 및 검사 검수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

1

설계·감리용역 및 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확인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4조에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해당 용역 계약 체결시에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실시설계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업무요령 제11조(발주청의 의무)에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항에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설계·감리용역 및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 체결 시 용역업자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역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 설계용역(계약금액: 0,000,000원, 계약일: 0000. 00. 00.)’ 등 총 17건의 계약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증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에 대한 공사를 감독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일요일 공사에 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총 11건의 공사에 대해 일요일에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3

계약 서류 징구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고,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 적용할 기준인 산출내역서와 계약서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0000학년도 ○○○○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출내역서 및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4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업무 소홀

「전기공사업법」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안 되고,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전기공사를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가 전기공사기술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 전기 공사 (계약금액: 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준공일: 0000. 0. 00.)’를 시행하면서 총 5건의 공사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전기공사기술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통보하지 않았는데도 전기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미징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역서에 분명하게 적고,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리공단에 신고 후 착공 시 가입증명원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자는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에 적용이 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가 내역서에 계상되었는지 확인하고 착공 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받고, 준공 시 산재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계약 등 총 6건의 계약에 대해 공사내역서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가 계상이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을 징구하지 않았다.

6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배치 업무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에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되면 발주자는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건설기술인을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공사(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 0000. 00. 00.)’와 1건을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현장대리인선임계약의 건설기술인이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건설공사 현장을 시공·관리하게 하였다.

7

계약금액 조정 시 하도급업체 통보 업무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2항에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업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7절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조정할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 통보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조정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는데도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지 않았고, 물가변동의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총 4건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 통보와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여부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8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하도급계약 통보 확인 업무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고, 하도급계약등을 변경한 때에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경우에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34조에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그 하도급을 변경계약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하수급인이 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공사 중 가시설공사 하도급계약(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준공일: 0000. 0. 00.)’ 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데도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

한편, 계약상대자인 ○○○○은 파일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통보하였다.

9

하도급계약 제한 업무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면 발주자의 서면 승낙 후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 0000. 00. 00., 준공일: 0000. 0. 00.)’를 진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통보하였는데도 이를 반력하거나 보완 요청하지 않는 등 하도급계약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10

공사 계약 품질시험계획서 확인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집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준공일: 0000. 00. 00.)’ 외 총 4건의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지 않았다.

11

용역 공동계약 업무처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에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시공관리를 하게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 등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해야 하며,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용역’을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각자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받지 않았는데도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총 2건의 계약에 대하여 공동계약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12

물품 검사·검수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제1항 및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8조의2(검사·검수)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공립 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이며,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시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 3천만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0000년 구입(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0. 0., 납품일: 0000. 00. 00.)’등 총 2건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완료되었음에도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13

공사계약 검사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설계서·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0. 0., 준공일: 0000. 00. 0.)’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검사를 완료하는 등 총 4건의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제4절

대가 지급 및 이후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

1

공사 하자담보책임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할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계약업체로부터 하자보수보증증권(서)을 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학년도 ‘○○○○ 공사(계약금액: 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등 공사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준공신청일로부터 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하자보수증권을 징구하는 등 하자보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노무비 지급 여부 확인 업무 소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2021. 4.)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 제외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 후 준공 시 발주기관에 노무비 지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고, 매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의 경우에는 준공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노무비 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0. 00., 준공일: 0000. 0. 00.)’ 등 총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노무비 지급 업무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건 공사의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2021. 4.)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근로자 노무비를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 준공일: 0000. 0. 00.)’ 등 3건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및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 준공일: 0000. 0. 00.)’ 대금은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지 않고 업체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

4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대장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완료)를 하여야 하고,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의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따로 (완료)검사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준공검사일: 0000. 0. 00.)’ 외 총 8건의 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 검사 미 실시 및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완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보수관리부에 기록·관리하지 않았으며,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하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선금 지급 업무 소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에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하고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자: 0000. 00. 00., 준공일자: 0000. 0. 00.(당초 0000. 0. 0.))’의 선금급 00,000,000원을 지급한 후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당초의 선금보증서 보증·보험 기간을 변경하여 징구하지 않았다.

6

건설공사 (하도급)선금배분 업무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4항에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에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수령한 원도급자가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도록 해야 하고, 배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를 시행하면서 0000. 00. 00. 선금 0,000,000,000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였는데도,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업체에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총 2건의 공사계약에 대해서 선금을 수령한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7

보험료 납부증명 확인 업무 소홀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거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에 기성 및 준공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 0000. 00. 00.)’ 계약의 준공 대가를 지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체납처분비 납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총 3건의 준공대가 지급 시 보험료 납부증명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8

시설공사 정산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1항, 제17조(검사)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미시공(미이행)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 0000. 00. 00., 준공일: 0000. 0. 00.)’에 대해 모르타르 바름 두께를 11mm(설계: 18mm)로 시공하였는데도 공사를 감독하고 검사를 시행하면서 미시공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0,000,000원을 많이 지급하였다.

9

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중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에서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 계약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반영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청구 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납부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 준공일: 0000. 0. 0.)’에 대한 공사를 감독하고 검사를 시행하면서, 준공금 지급 시 보험료 납부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만 정산하지 않고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정산하여 0,000,000원을 많이 지급하였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업무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1항에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준공일: 0000. 0. 00.)’를 감독하고 검사를 시행하면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비 사용명세서를 검토·확인하여 당해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구매 사진 및 현장에서 착용한 근거가 없는 개인보호구 등에 대해서 감액 조정 등 준공 시 정산 처리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0,000원을 많이 지급하였다.

11

환경보전비 정산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환경보전비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준공일: 0000. 0. 00.)’에 대한 공사를 감독하고 검사를 시행하면서, 업체가 환경보전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환경보전비 000,000원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12

건설폐기물처리비 정산 업무 소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발주자의 의무)에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며, 제16조(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에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며,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고,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용역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처리비의 사용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0000년도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 0000. 0. 00., 준공일: 0000. 0. 00.)’에 대한 공사 정산 업무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증빙자료를(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등) 미제출하였음에도 준공검사 시 정산처리 및 변경계약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0,000,000원을 많이 지급하였다.



제5절 기타 지적 사례

1

계약문서 등록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착공 시 제출한 착공신고서와 공사 완성 후 서면으로 통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 공사(계약금액: 000,000,000원, 계약일자: 0000. 00. 00., 준공일자: 0000. 0. 0.)’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신고서와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고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총 14건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지 않았다.

2

공고문서 작성 및 결재 소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령 제6조에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공고문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공고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공사 상주감리 용역’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고 문서를 결재권자에게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받지 아니하고 나라장터에 공고하였다.

만든 사람들

총괄 문정숙 재정과장

기획 · 서영교 재정과 계약담당사무관
· 구주영 재정과 주무관

집필 **계약일반** · 하만일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
· 박진희 김해교육지원청 경리담당(파견)
· 이국현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주무관
· 박만희 마산신월초등학교 주무관

공 사 · 하동수 창원남산유치원 행정실장
· 최문정 금송초등학교 주무관
· 백민기 봉래초등학교 행정실장

용 역 · 박숙현 신기초등학교 행정실장
· 박혜정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주무관
· 이나래 창원도서관 주무관

물 품 · 손재민 명곡여자중학교 행정실장
· 양은자 생림초등학교 행정실장
· 옥영미 사천초등학교 행정실장

검토 · 정순옥 재정과 주무관
· 권영민 시설과 주무관
· 이동욱 재정과 주무관
· 우병호 창원교육지원청 예산담당
· 김경희 재정과 주무관
· 조혜란 토월고등학교 주무관
· 원지혜 교육복지과 주무관
· 이창하 가야초등학교 행정실장
· 김유미 감사관 주무관
· 문동주 회화초등학교 행정실장
· 양지원 감사관 주무관
· 조정민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 행정실장
· 배정한 노사협력과 주무관

